

2018 기획연구과제

**인천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기초조사**

▮ 연구책임

김정욱 도시경영연구실 부연구위원

▮ 연구참여

진성만 도시경영연구실 초빙연구원

본 연구결과는 연구진의 견해로서
인천광역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요약

I. 연구개요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비영리민간단체는 정부가 대응하지 못하는 지역사회의 요구에 대응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등 공익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공동의 이익이나 후생에 기여하고 있음. 비영리민간단체는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환경·생태·재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최근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의제설정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 간의 민관협력이 강조되고 있음.
 - 문재인 정부들어 사회적경제 활성화, 주민참여와 마을자치, 사회서비스·도시재생·문화예술·소셜벤처 등에서 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역할 등이 강조되고 있음(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7.10.17. 배포).
- 인천광역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립과 제도 설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음.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활성화의 중요성과 민간협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인천광역시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정책은 공익사업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그치고 있음.
-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의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고,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 본 연구는 비영리민간단체 현황자료와 설문조사를 통해 인천광역시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내용, 조직 및 운영에 대한 내용, 네트워크 및 협력,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자 함.
 - 기초조사를 통해 인천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① 인천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정책 검토 및 분석, ② 인천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분석, ③ 인천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기초자료를 위한 설문조사, ④ 인천광역시 공익활동 지원정책 방향 제시임.
- 조사 및 분석의 대상은 2018년 3월 현재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하였음.
- 연구의 방법은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문헌조사, 자문회의 등을 실시하고자 함.
- 문헌조사 : 공익활동과 비영리조직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공익활동관련 용어 및 관련조직, 공익활동에 대한 이론을 검토할 것임.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공문서 및 통계자료를 통해 인천광역시 공익활동 지원제도 및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등을 검토 및 분석함.
- 설문조사 : 설문조사는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초조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하고자 함.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및 공익활동 지원의 수요 등에 대한 항목이 포함될 것임.
- 전문가 자문회의 : 연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및 수요조사를 위한 설문문항의 구성, 자료의 분석 등에 대한 내용으로 자문회의를 실시함.

II. 연구결과

■ 공익활동에 대한 이론 및 현황

-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을 위해 활동하는 조직으로 인천광역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모든 단체를 의미함.
- 공익활동 지원은 인천광역시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및 기타 관련 특별법에 의해 등록·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들을 행·재정적 방법을 동원하여 지원하는 것을 의미함.
-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데 근거가 되는 이론은 정부실패이론, 제3정부이론, 비영리실패이론, 사회적자본이론 등이 있음.
- 정부실패이론은 비영리조직이 행정기능의 한계를 보완 혹은 대체하고 있다고 논함.
- Salamon(1987)의 제3정부이론은 정부가 설계한 공공정책을 비영리조직이 집행하거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음.

- 비영리실패이론은 비영리조직이 갖는 내재적인 한계로 인해 공익활동의 수행 시 어려움을 갖는다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임(Salamon, 1987).
- 사회적자본이론은 다양한 행위자들이 상호교류하고 소통함으로써 그리고 시민들의 비영리 조직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정보나 자원의 이동, 신뢰와 규범의 형성 등 사회적자본을 구축하는 것을 설명함(Ott & Dicke, 2012).
- Frumkin(2002)은 비영리조직의 핵심적인 기능을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하였음.

■ 인천광역시 공익활동 지원제도

- 공익활동 지원의 법적 근거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2000.1. 제정)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고 있는 공익활동 지원조례가 있음.
 - 공익활동 지원조례는 시민들이 공익활동에 참여를 활성화하고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 조례는 지역사회의 공익활동을 주도하는 조직들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설립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음.
 - 특·광역시 중에는 인천광역시와 울산광역시만 제정하고 있지 않음.
-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인천광역시청의 주무부서는 행정관리국의 자치행정과 시민협력담당임. 시민협력담당에 소속된 주무관 1명이 비영리민간단체와 공익활동지원사업을 관리·지원하고 있음.
 -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는 방식은 직접적 지원(사업비 지원 등), 간접적 지원(조세감면, 우편요금 지원 등), 행정적 지원(후원 등)으로 분류하고 있음(박영선, 2015).
 - 지방자치단체의 공익활동 지원방식은 보조금의 제공(동법 제6조) 또는 보조금성 경비의 지원(동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존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 인천광역시는 현재(2018년) 15억 원(2017년 대비 150% 인상)의 예산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위한 154개 사업에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음.
 - 2013년에는 150개의 사업에 16.2억 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에는 167개의 사업에 16.2억 원으로 지원하였음. 이후 2015년(100개 사업, 8억 원), 2016(110개 사업, 10억 원), 2017년(116개 사업, 10억 원) 등 사업의 대상이나 지원의 규모가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음.

- 2000년에 제정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하여 142개의 비영리민간단체가 인천광역시에 등록되었음. 2001년부터 2017년 평균 31.2개의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되었음.
-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활동 분야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체육 분야가 105개(15.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다음으로 복지·보건(13.0%), 생태·환경(12.5%), 아동·청소년(10.5%) 순으로 나타남.

❖ 인천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및 지원의 수요 등에 관한 조사

- 설문조사는 인천광역시의 공익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초조사로서 비영리민간단체의 조직 및 일반현황, 활동 및 운영 현황, 거버넌스 및 네트워크, 그리고 공익활동 지원정책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인천시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중 150개의 단체가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음.
- 설문참여단체의 일반특성 및 주요 활동 분야·내용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설립시기별로 살펴보면, 2001~2010년(39.2%)에 설립하여 활동 중인 비영리민간단체가 가장 많았으며, 1991~2000년(23.0%), 1981~1990년(18.2%) 순임. 등록시기로는 2006~2010년(29.3%)과 2011년 이후(29.3%)가 가장 많았으며, 2000년 이전(22.0%), 2001~2005년(19.3%)로 조사되었음. 지역별로 살펴보면, 남동구(28.0%)가 가장 많았으며, 미추홀구(22.7%), 부평구(13.3%), 서구(10.0%), 중구(9.3%) 순으로 나타났음.
 - 주요 활동 분야는 ‘문화·예술·체육’을 주요활동 분야로 응답한 비영리민간단체가 52개(13.9%)로 가장 많았음. ‘교육’(49개, 13.1%), ‘봉사활동’(48개, 12.8%), ‘아동·청소년·청년’(39개, 10.4%)에 대한 활동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비영리민간단체의 주요 활동내용으로는 ‘교육·강연회 개최’(26.9%), ‘음악회·전시회·축제 개최’(15.4%), ‘물품·서비스 제공’(9.8%) 등의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비영리민간단체의 운영 및 조직

- 인천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의 직원 및 회원에 대한 내용은 임원의 수, 상근직원의 수, 비상근직원의 수, 회원의 수, 자원봉사자의 수 등을 조사하였음.
 - 임원은 ‘11명 이상’(30.0%)이 가장 많았으며, 3~5명(29.3%), ‘6~10명’(23.3%) 순으로 나타났음. 상근직원은 ‘1~2명’(47.3%)이 가장 많았으며, ‘상근직원이 없다’고 응답한

비영리민간단체도 21개(14.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비상근직원은 ‘없음’이라고 응답한 단체가 절반 이상(52.4%)이며, 비상근직원이 있을 경우 ‘1~2명’(23.8%)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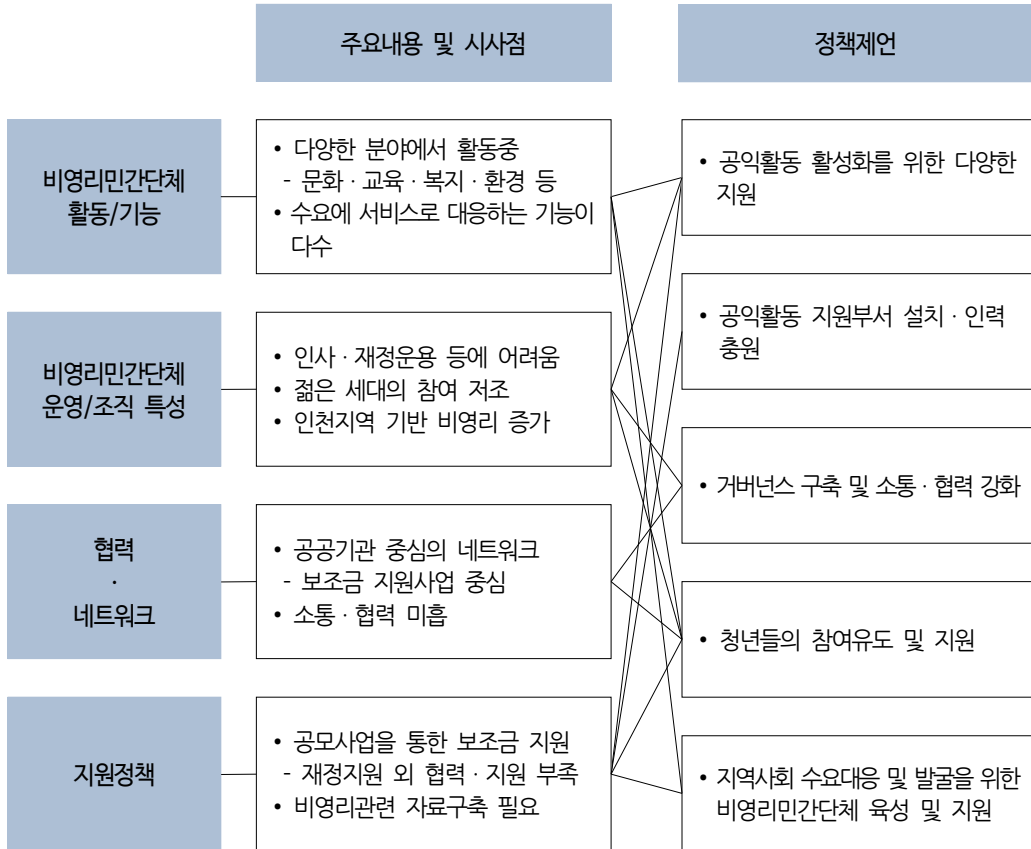
- 회원은 ‘101명 이상’(45.9%)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으며, 회원이 없다고 응답한 단체도 9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자원봉사자는 ‘없음’(26.7%)의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자원봉사자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101명’(26.0%)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음.
- 회원의 성별에 대해서는 여성의 비율이 ‘51~70%’, ‘71~90%’라고 응답한 비영리민간단체가 각각 26.5%, 17.0%로 같은 구간에서 남성의 비율(14.3%, 11.65%)보다 더 높게 나타났음.
- 홈페이지를 운영하거나 소셜미디어(SNS) 계정의 운영 유·무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영리민간단체가 105개(70.0%)로 많았으며, 소셜미디어(SNS)의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46.7%)한 단체보다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단체(53.3%)가 더 많았음.
- 설문조사에 참여한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는 ‘남성’(79.8%)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연령은 ‘51~60세(41.8%)’가 대표자인 단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며, ‘61~70세’(34.2%)가 대표자인 단체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대표자의 학력은 ‘학사(34.6%)’와 ‘석사(31.4%)’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대표자가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한 기간은 ‘5년 미만’(44.8%), ‘5~10년’(31.3%)이 높았으며, 대표자로서의 임기기간도 ‘5년 미만’(46.6%), ‘5~10년’(32.5%) 순임. 대표자의 수는 ‘1명’이 94.7%로 가장 많았음.
- 설문에 참여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조직 형태로 ‘인천지역 독립조직’(5.20%)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전국단위 지부조직’(30.7), ‘전국단위 독립조직’(12.0%), ‘전국단위 연대조직’(5.3%) 순임.
- 주요한 의사결정 단위로 ‘이사회’(45.8%)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표 및 실무자 회의’(25.2%), ‘대표자’(12.3%) 순으로 조사되었음.

❖ 인천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의 거버넌스 및 네트워크

- 비영리민간단체가 협력하고 있는 단체로는 ‘인천광역시’(25.6%)가 가장 많았으며, ‘자치군·구청’(18.6%), ‘비영리민간단체’(16.6%) 순으로 나타났음.
-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천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간의 협력 및 연대는 낮은 것(2.38~3.28점)으로 판단됨.

- 반면,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대한 인천광역시청의 지원의 필요성(3.35~4.32점)에 대한 점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중앙정부, 인천시청 또는 자치군·구청과의 협력방식, 소통정도, 참여경험 등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음.
 - 중앙정부, 인천시청 또는 자치군·구청과의 협력방식은 ‘정부 보조금’(37.9%)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사업·프로젝트 공동진행’(17.7%), ‘정보·자료이용’(13.3%) 순으로 나타났음.
 - 민관협력을 위한 소통의 정도는 ‘분기별 1회’(34.9%)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6개월에 1회’(33.6%), ‘1달에 1회’(21.5%) 순으로 나타났음.
 - 인천광역시의 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에 대해서는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단체(70.7%)가 참여한 적이 없는 단체(29.3%)보다 두 배 이상 많았음.
- 인천광역시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개선 분야 및 지원을 원하는 분야 등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음.
 - 인천광역시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평점 2.59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으로 ‘공익활동 지원사업 예산증액’(30.1%)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음. 운영비 등으로의 재정지원 항목확대(22.1%), 행정·회계절차 간소화(18.0%) 등으로 조사되었음.
 -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천광역시의 지원분야에 대해서는 ‘재정지원’(4.43)이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음. ‘공간지원: 임대료 지원·공공기관 소유 건물의 장기임대’(3.95), ‘청년들의 참여·활동 지원’(3.75) 등에 대한 점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비영리민간단체 활동가의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사업기획’(22.1)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음. ‘회계’(16.9%), ‘모금’(15.3%), ‘홍보’(13.4%), ‘법률’(11.5%), IT(11.1%) 순으로 조사되었음.
-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으로는 평균점수 3.01로 나타났음.
 -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각각 32.7%, 8.0%)라고 생각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각각 19.3%, 15.3%)라고 응답한 비영리민간단체보다 조금 많았음.

III. 정책제언



〈그림〉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익활동 지원방향

- 인천광역시 공익활동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분석을 중심으로 현행 공익활동 지원과 관련된 제도 및 조직의 검토, 현황분석 등을 통해 공익활동관련 정책방향을 제시함.

❖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 인천광역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 및 활성화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사업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인천시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공모사업을 통한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음. 서울시·부산시·대구시·광주시·대전시 등의 특·광역시처럼 교육훈련과정 운영, 상담 및 컨설팅 제공, 네트워크 구축 및 확산, 연구지원 및 정보제공, 공간의 제공 등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재정지원으로 한정되더라도 적용되는 항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현재 인천시가 제공하고 있는 보조금 지원은 금액이 적을 뿐만 아니라 사업비로만 한정되기 때문에 지원의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음.
- 비영리민간단체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 공익활동의 활성화 및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거나 운영비·인건비·공간지원(임대료 또는 공공기관의 공간 활용) 등으로 지원항목의 변경·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공익활동 지원부서 설치 및 인력충원

- 공익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조직을 구축하고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음.
- 공익활동 지원부서를 인천시청 내에 설치하고, 직원들을 충원하거나 중간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하는 등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인력충원이 필요함.
-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이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시민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을 별정직으로 임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거버넌스 구축 및 소통·협력의 강화

- 인천시청과 비영리민간단체, 인천지역의 비영리민간단체 간, 인천시민과 비영리민간단체 간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인천지역의 소통·교류·협력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
- 현재는 보조금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협력의 주된 이유이지만, 인천광역시청이 비영리민간단체 간의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비영리민간단체와 협력하고 있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간에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인천시청은 인천시민, 비영리민간단체, 공공기관이 소통과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매개·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청년의 참여유도

- 청년들이 비영리민간단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타 지역에서는 공익활동지원센터와 청년센터를 같은 공간에 두어 상호 교류·공유함으로써 상승효과(Synerge)를 만들거나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 즉, 인천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익활동이나 사회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크 형성, 공간의 제공, 상담 및 컨설팅 제공, 공모사업의 추진 등을 할 수 있을 것임.

■ 지역사회의 수요 대응 및 발굴을 위한 공익활동 지원

- 지역문제 해결, 지역사회 현안 및 수요 발굴 및 대응하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육성하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 비영리민간단체가 지역사회에 서비스와 물품을 제공함으로써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비영리민간단체에 행·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현안과 수요를 발굴하여 대응하는 역할을 하는, 즉 공급-도구의 영역에 속하는 역할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발굴·육성·지원할 필요가 있음.

차 례

I 연구의 개요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5

II 공익활동에 대한 이론 및 현황

- 1. 공익활동 지원 및 관련조직 9
- 2. 공익활동관련 이론적 배경 10
- 3. 인천광역시 공익활동 지원제도 12
- 4. 인천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17

III 인천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설문조사

- 1. 조사의 설계 27
- 2. 인천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기초조사 분석결과 29
- 3. 소결 및 시사점 51

IV 인천광역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언

- 1.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59
- 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64

참고문헌 66

부록(설문지) 68

표 차례

<표 1> 비영리 공익활동의 두 가지 차원	12
<표 2> 특광역시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조직 및 주요업무	16
<표 3> 인천시 공익활동 지원사업 지원현황	18
<표 4> 지역별·연도별 인천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의 수	18
<표 5> 인천광역시 군·구별 비영리민간단체의 수	20
<표 6> 담당부서별 비영리민간단체의 수	21
<표 7> 인천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활동분야별 수	23
<표 8> 설문조사 개요	28
<표 9> 설문지 구성	29
<표 10> 설문응답 비영리민간단체 일반현황	30
<표 11> 설문응답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분야	30
<표 12> 비영리민간단체의 주요 활동 내용	31
<표 13> 직원 및 회원현황	32
<표 14> 회원의 성별 분포	33
<표 15> 홈페이지·소셜미디어(SNS)계정 운영 유무	33
<표 16> 대표자관련 일반사항	34
<표 17> 응답 단체의 조직 형태	35
<표 18> 주요 의사결정 단위	35
<표 19> 임원회의(2017년) 개최 빈도	36
<표 20> 총회 개최 빈도	36
<표 21> 주요쟁점 및 수요 확인을 위한 의견수렴과정 진행 여부	36
<표 22> 의견수렴과정의 빈도	36
<표 23> 활동 및 운영 내용 외부공개 여부	37
<표 24> 활동 및 운영 내용 외부공개 매체	37
<표 25> 응답단체의 주된 수입원	37

표 차례

<표 26> 2017년도 예산 규모	38
<표 27> 2017년도 항목별 지출 규모	38
<표 28> 예산 및 재정 집행 내역 외부공개 여부	38
<표 29> 예산 및 재정 집행 내역 외부공개 매체	39
<표 30> 공익활동 수행 시 한계 또는 어려움	39
<표 31> 비영리민간단체의 주요 협력기관	40
<표 32> 인천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협력네트워크 중심성 분석결과	42
<표 33> 협력 및 연대의 목적	43
<표 34> 비영리민간단체 간 협력 : 공동사업 및 프로젝트 수행	44
<표 35> 비영리민간단체 간 협력 : 집회·캠페인·서명 등 공동행동	44
<표 36> 비영리민간단체 간 협력 : 소통 및 의사결정 등을 위한 회의 참여	45
<표 37> 비영리민간단체 간 협력 : 공간 공유	45
<표 38> 비영리민간단체 간 협력 : 정보 및 자료 공유	46
<표 39> 비영리민간단체 간 협력 : 사무 및 IT 용품 공유	46
<표 40> 중앙정부, 인천시청 또는 자치군·구청과의 협력방식	47
<표 41> 비영리민간단체와 공공기관 간 소통의 정도	47
<표 42> 보조금 지원 사업 진행 여부	48
<표 4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49
<표 4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	49
<표 45>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분야	50
<표 46> 비영리단체 활동가의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훈련분야	51
<표 47>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필요 여부	51

그림 차례

<그림 1> 법률 체계도 : 지방자치단체의 공익활동지원	13
<그림 2> 지역별 · 연도별 비영리민간단체의 수	19
<그림 3> 인천광역시 군 · 구별 비영리민간단체의 수	20
<그림 4> 인천광역시 군 · 구별 비영리민간단체의 수(인구 1,000명당)	21
<그림 5> 인천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협력네트워크	42
<그림 6>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익활동 지원방향	59

I

연구의 개요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비영리민간단체는 정부가 대응하지 못하는 지역사회의 요구에 대응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등 공익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공동의 이익이나 후생에 기여하고 있음. 비영리민간단체는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환경·생태·재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예를 들면, 사회복지관련 비영리민간단체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집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교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장학금·도시락 등을 제공함.
 - 북한이탈주민이나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비영리민간단체는 정착 및 적응을 위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거나 적절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
 - 안전·재난관련 비영리민간단체는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구호물품을 제공하거나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구호활동을 수행함.
-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의제설정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 간의 민관협력이 강조되고 있음.
 - 지난 2000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주성수·박영선·김이경, 2014).
 - 문재인 정부들어 사회적경제 활성화, 주민참여와 마을자치, 사회서비스·도시재생·문화예술·소셜벤처 등에서 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역할 등이 강조되고 있음(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7.10.17. 배포).¹⁾
- 인천광역시는 시민사회가 양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임. 비영리민간단체

1) 2017년 10월 17일, 일자리 위원회에서 발표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도자료 참고.

등록제도가 처음 시행된 지난 2000년 142개였던 비영리민간단체가 2018년 2월 현재 총 674개로 증가하였음.

- 2013년 150개의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총 16.2억 원의 공익활동 공모사업을 진행하였음. 2018년 현재 인천광역시는 총 15억 원(2017년 대비 150% 인상)의 예산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사업(154개, 2017년 116개)을 지원하고 있음.
- 인천광역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립과 제도설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음.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설립, 공익활동 지원조례의 제정 등의 논의를 시작하고 있음.
 -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활성화의 중요성과 민간협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해 공익사업을 위한 보조금 지원에 그치고 있음.
- 인천광역시의 비영리민간단체나 공익활동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지원조직과 지원제도, 보조금지원, 특정 사안에 대한 거버넌스 구조 등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분석하였음.
 - 김정옥·진성만(2017)은 인천지역의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제도 및 지원조직에 대해서 연구하였음. 이용식(2011, 2012)은 인천의제 21과 관련한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연구 및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조금지원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음.
 - 기존에 수행된 연구는 인천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관련 현황 및 지원체계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나 연구는 아님.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기초자료가 부족한 상황임.
- 공공기관과 시민사회 간 협력의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만큼 인천시민과 인천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촉진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됨.
 - 인천광역시의 공익활동을 도모하고 지원의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내용이나 희망하는 지원사항 등에 대한 기초조사가 필요함.
-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의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고,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 본 연구는 비영리민간단체 현황자료와 설문조사를 통해 인천광역시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내용, 조직 및 운영에 대한 내용, 네트워크 및 협력,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자 함.

- 기초조사를 통해 인천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다음과 같음.
 - 인천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정책 검토 및 분석
 - 인천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분석
 - 인천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기초자료를 위한 설문조사
 - 인천광역시 공익활동 지원정책 방향 제시
- 조사 및 분석의 대상은 2018년 3월 현재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하였음.

2) 연구방법

- 인천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기초조사를 위해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문헌조사, 자문회의 등을 실시하고자 함.
 - 문헌조사 : 공익활동과 비영리조직관련 선행연구를 통해 공익활동관련 용어 및 관련조직, 공익활동에 대한 이론을 검토할 것임.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공문서 및 통계자료를 통해 인천광역시 공익활동 지원제도 및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등을 검토 및 분석함.
 - 설문조사 : 공익활동의 현황 및 지원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설문조사는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초조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하고자 함.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및 공익활동 지원의 수요 등에 대한 항목이 포함될 것임.
 - 전문가 자문회의 : 연구의 타당성 및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할 것임.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및 수요조사를 위한 설문문항의 구성, 자료의 분석 등에 대한 내용으로 자문회의를 실시함.

Ⅱ

공익활동에 대한 이론 및 현황

Ⅱ. 공익활동에 대한 이론 및 현황

1. 공익활동 지원 및 관련조직

- 비영리민간단체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윤을 구성원들에게 분배하지 않음. 공공의 목적을 추구하는 자발적이고 자치적인 민간조직을 말함(조홍식·염태산·김희정·정의진·조상욱, 2011).
 - 일반적으로 공익활동 지원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 즉, 공익의 개념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활동에 대해 행·재정적 방법을 동원하여 지원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장수찬·박영선·김제선, 2015).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서 말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학문적으로 비정부기구, 비영리조직, 시민단체, 공익법인, 시민사회단체, 제3섹터, 관변단체 등으로 지칭되는 조직들을 포함함(Anheier, 2005; 김준기, 2006).
 - 각 조직은 활동영역에 따라 국가와 시장에 대해 취하는 관계와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규정하는 용어 역시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음(김동춘 외, 2004).
 - 용어의 차이는 있으나 모든 조직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공익을 추구한다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음(김정욱·진성만, 2017).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로 통칭할 것이며, 관련이론에서 비영리조직으로 설명할 경우에는 비영리조직을 사용할 것임.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르면,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의미함.
 - 비영리민간단체는 행정요건적 신고의 대상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수리하도록 하고 있음.²⁾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각호에서 규정하고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에 따르면,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정부·비정파·비영리 결사체로서 오직 공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만 비영리민간단체라고 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의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추구를 위해 활동하는 조직으로 인천광역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모든 단체를 의미함.
- 공익활동 지원은 인천광역시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및 기타 관련 특별법에 의해 등록·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들을 행·재정적 방법을 동원하여 지원하는 것을 의미함.

2. 공익활동관련 이론적 배경

- 본 절에서는 정부실패이론, 제3정부이론, 비영리실패이론, 사회적자본이론 등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데 근거가 되는 이론들을 간략히 설명하고자 함.

■ 정부실패이론(Government Failure Theory)

- 정부실패이론은 비영리조직이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의 보완 혹은 대체자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함(Young, 1989a).
- 행정의 전문·복잡·다양화로 정부의 행정효율 저하, 창의력 발휘 미흡, 다양한 복지수요 대응실패 등 행정기능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음(임승빈, 2009).
- 정부실패이론은 비영리조직이 행정기능의 한계를 보완 혹은 대체하고 있다고 논함으로써 정부가 비영리조직이 공익활동을 수행할 경우 행·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근거를 제공함.

■ 제3정부이론(Third-Party Government)

- Salamon(1987)의 제3정부이론은 정부가 설계한 공공정책을 비영리조직이 집행하거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음.
- 비영리조직은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문제나 수요를 파악하는데 장점이 있음(Young, 1989b). 또한, 비영리조직은 정부가 갖고 있지 못한 전문성이나 지역에 대한 지식 등을 갖추고 있음.
- 이런 이유들로 정부는 공공정책의 집행이나 공공서비스 제공 시 비영리조직과 협력하고 있음. 비영리조직은 정부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부의 행·재정적 지원은 필요함.

❖ 비영리실패이론(Voluntary Failure Theory)

- 비영리실패이론에서는 비영리조직이 갖는 내재적인 한계로 인해 공익활동의 수행 시 어려움을 갖는다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임(Salamon, 1987).
- 비영리실패이론은 비영리조직이 공익활동 수행을 위한 자원의 부족(박애적 불충분성), 특정 수혜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공급하는 비영리조직의 한계(박애적 배타주의), 기부자의 목적에 운영되는 비영리조직의 한계(박애적 온정주의), 공익활동 수행을 위한 전문성의 부족(박애적 아마추어리즘) 등의 내재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고 설명함(Salamon, 1987).
-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수행을 위해 비영리조직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는 차원에서 정부의 지원이나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사회적자본이론(Social Capital Theory)

- 사회적자본이론은 다양한 행위자들이 상호교류하고 소통함으로써 그리고 시민들의 비영리조직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정보나 자원의 이동, 신뢰와 규범의 형성 등 사회적자본을 구축하는 것을 설명함(Ott & Dicke, 2012).
- 사회적자본이론의 관점에서 비영리조직의 활동과 공익활동 활성화가 중요한 이유는 활발한 상호작용과 교류를 발생시킴으로써 사회적자본을 발생시키기 때문임. 즉, 신뢰와 호혜성의 규범, 그리고 정보의 교류 등 사회적자본의 형성을 통해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기 때문임(Putnam, 2000).

❖ 비영리 공익활동의 두 가지 차원

- Frumkin(2002)은 비영리조직의 핵심적인 기능을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하였음.
- 첫 번째 차원은 비영리조직의 기능을 수요와 공급으로 설명하고 있음. 비영리조직은 충족되지 않은 수요에 대응하거나 수요를 창출하는 공급의 기능한다고 설명함.
- 두 번째 차원은 비영리조직의 도구적 측면과 표현적인 측면으로 설명하고 있음.
- 두 차원에 따라서 비영리조직은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표 1〉 비영리 공익활동의 두 가지 차원

구분	수요 측면	공급 측면
도구적 측면	서비스 제공 •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충족되지 않는 요구에 대응 • 정부실패나 시장실패에 대응	사회적기업가 정신 • 기업가정신을 발현하기 위한 창구 • 상업적이며 동시에 자선적인 목적을 달성하는 사회적기업
표현적 측면	시민 & 정치참여 •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화하거나 시민들의 의견 대변 • 지역사회 사회자본 형성	가치와 신념 • 시민들이 직원, 자원봉사, 기부 및 후원 등으로 조직에 참여함으로써 가치나 신념 등의 실현이 가능하도록 함.

자료 : Frumkin (2002), On Being Nonprofit, p.25.

- 첫 번째 유형은 〈표 1〉의 왼쪽 윗 부분에 위치한 수요-도구적 측면임. 이 유형에 속하는 비영리조직은 충족되지 않은 수요에 대해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능을 함.
- 두 번째 유형은 〈표 1〉의 왼쪽 아랫 부분, 즉 수요-표현적 측면에 속하는 비영리조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거나 전달하는 역할을 하거나 지역사회에 사회적자본을 형성하는 기능을 담당함.
- 세 번째 유형은 〈표 1〉의 오른쪽 윗 부분인 공급-도구적 측면에 속하는 비영리조직임. 이 유형에 속하는 비영리조직은 창출된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자로서 사회혁신조직 또는 사회적기업 등이 있음.
- 네 번째 유형의 비영리조직은 〈표 1〉의 오른쪽 아랫 부분인 공급-표현적 측면에 속하며, 조직의 활동이나 일을 통해 직원, 자원봉사자, 기부-후원자 등이 추구하는 가치나 신념을 표출하는 기능을 담당함.

3. 인천광역시 공익활동 지원제도

1) 공익활동 지원의 법적 근거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은 2000년 1월 제정되었음.³⁾ 지원법의 목적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임.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은 민간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시민단체가 자발적으로 입법 추진한 시민사회 발전기본법(안)을 절충하여 제정되었음. 양 법안 내용 중 지원재단설립 및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설치문제에 대하여 각계에서 많은 의견이 제기되었으나, 1999년 10월부터 학계 및 시민운동계 등과의 공청회와 자문회의, 시민단체 실무대표들 간담회 등을 통해 절충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정에 이르게 되었음(고경훈·안영훈, 2015).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의 기본방향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비영리민간단체의 범위와 등록 요건, 지원방법 등을 명문화하고 있음.
- 지원법이 제정되기 전,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 한국자유총연맹 등과 같이 각 특별법에 의거하여 일부의 단체에 대해서만 배타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었음 (고경훈·안영훈, 2015).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의 제정에 따라, 특수목적을 위한 비영리·비정부·공익법인이 아닐지라도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편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되고 있음(박영선, 2015).
- 그러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상 비영리민간단체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도지사로 한정되어 있음(동법 제6조). 즉,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야만 가능한 상황임(김정옥·진성만, 2017).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 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 등 특수목적 비영리법인 관련 법률,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단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됨.
지방재정법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주체가 시도지사인 경우(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공 지출을 할 수 있음(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보조금 관리조례	조례에 해당 사업의 지출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관리조례나 재정운영조례 등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있음.

〈그림 1〉 법률 체계도 : 지방자치단체의 공익활동지원

- 2013년 5월 서울시를 시작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공익활동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추세임. 특·광역시 중에는 인천광역시와 울산광역시만 제정하고 있지 않음.
- 공익활동 지원조례는 시민들이 공익활동에 참여를 활성화하고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 조례는 지역사회의 공익활동을 주도하는 조직들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설립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음.

- 특·광역시 공익활동지원 중간지원조직 사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본 조례에 근거하더라도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위 <그림 1>의 각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조례 상의 규정에 따른 재정지원만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음(김정욱·진성만, 2017).

2) 공익활동 지원의 방법

-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는 인천광역시청의 주무부서는 행정관리국의 자치행정과 시민협력담당임. 시민협력담당에 소속된 주무관 1명이 비영리민간단체와 공익활동지원사업을 관리·지원하고 있음.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
 -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에 대한 자율성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음(동법 제5조 제1항).
-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는 방식은 직접적 지원(사업비 지원 등), 간접적 지원(조세감면, 우편요금 지원 등), 행정적 지원(후원 등)으로 분류하고 있음(박영선, 2015).
 - 지방자치단체의 공익활동 지원방식은 보조금의 제공(동법 제6조) 또는 보조금성 경비의 지원(동법 제10조 및 제11조)에 의존하고 있음.

❖ 보조금 지급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에서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지원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제1항).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대한 기부·보조·출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음. 단,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제2항). 사업비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아 수행하는 공익사업에 소요되는 인적·물적 경비를 의미함(동법 시행령 제2조). 다만, 인적 경비는 단체의 임·직원에게 대한 보수가 아닌 실비성격의 경비에 한정하고 있음.

■ 보조금성 경비 지원

- 비영리민간단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및 기타 조세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음(동법 제10조).
- 비영리민간단체는 공익활동에 필요한 우편물에 대하여 우편요금의 일부(일반 우편요금의 100분의 25를 감액)를 감액받을 수 있음(동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 행정지원 및 협력

-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동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공익활동지원

- 인천광역시와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는 공익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공익활동을 지원을 전담하는 중간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위해 상담 및 컨설팅 제공, 비영리민간단체의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훈련과정 제공,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비영리민간단체 간 교류와 협력 지원, 공익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공간의 제공 등 공익활동 전반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는 추세임(〈표 2 참고〉).
 - 인천시는 공모사업을 통한 재정지원만 제공하고 있는 반면, 인천시와 울산시를 제외한 특·광역시에는 중간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해 사업비지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음(김정옥·진성만, 2017).

<표 2> 특·광역시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조직 및 주요업무

구분	지원조직	주요업무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 시민협력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NPO 지원센터 운영 비영리민간단체 허가·등록·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익활동 기반조성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 공익활동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서울시NPO지원센터 (2013.11 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트워크 구축 및 확산 연구 및 정보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상담 및 컨설팅 제공 공익활동 위한 공간 제공
부산시	기획행정관 자치행정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영리민간단체 허가·등록·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지원·관리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2009.07 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네트워크 구축 및 확산 연구지원 및 정보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담 및 컨설팅 제공 공익활동 위한 공간 제공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주민자치위원회 교육
대구시	시민행복교육국 시민협력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익활동 활성화·지원센터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사회 협력사업 추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영리민간단체 허가·등록·관리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2016.04 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네트워크 구축 및 확산 연구 및 정보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담 및 컨설팅 제공 공익활동 위한 공간 제공 신규 조직 양성위한 공간 제공 공익활동 사업 공모
인천시	소통담당관 소통정책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민사회 소통네트워크 운영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영리민간단체 허가·등록·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
광주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영리민간단체 허가·등록·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 NGO센터 운영
	광주NGO센터 (2009.07 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네트워크 구축 및 확산 연구 및 정보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담 및 컨설팅 제공 공익활동 위한 공간 제공 신규 조직 양성위한 공간 제공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및 지원
대전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영리민간단체 허가·등록·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 NGO센터 운영
	대전광역시INGO지원센터 (2015.10 개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네트워크 구축 및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 및 정보의 제공 상담 및 컨설팅 제공 신규 조직 양성위한 공간 제공 공익활동 위한 공간 제공
울산시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영리민간단체 허가·등록·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

자료 : 김경옥·진성만 (2017), 인천시 공익활동 지원방안 연구, p.39, 수정.

3)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선정방식

-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하여야 함.
 - 공익사업의 유형은 ① 국가 또는 시·도의 사업과 중복되지 아니하는 사업, ② 국가 또는 시·도의 정책에 대하여 보완·상승효과를 가지는 사업, ③ 전국적 또는 시·도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을 말함(동법 시행령 제5조).
 - 행정안전부 장관은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1월 31일까지 공고하거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함(동법 제7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선정된 공익사업의 유형 내에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정하여야 함. 개별적인 지원사업에 대한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이 원칙임(동법 제7조 제2항).
 -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국회의장 또는 당해 시·도의회 의장이 추천한 3인과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관계전문가들로 구성함(동법 제7조 제3항).
-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당해 회계연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동법 제8조).
 -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목적,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방법, 세부추진계획, 사업의 기대효과, 사업비 집행계획 및 기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동법 시행령 제10조).

4. 인천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 인천광역시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황

- 인천광역시는 현재(2018년) 15억 원(2017년 대비 150% 인상)의 예산으로 비영리민간 단체의 공익활동을 위한 154개 사업에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음.⁴⁾

4) 서울시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151개 단체에 22.00억원(2018년)을 제공하고 있음(서울시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결과 참고). 2017년에는 158개 단체에 21.99억원, 2016년에는 151개 단체에 25.61억원, 2015년에는 20.36억원을 지원하였음.

인천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2017년 6월 기준 673개)가 서울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2017년 6월 기준

- 2013년에는 150개의 사업에 16.2억 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에는 167개의 사업에 16.2억 원으로 지원하였음. 이후 2015년(100개 사업, 8억 원), 2016(110개 사업, 10억 원), 2017년(116개 사업, 10억 원) 등 사업의 대상이나 지원의 규모가 감소하거나 정체되어 있음.

〈표 3〉 인천시 공익활동 지원사업 지원현황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지원예산	16.2억원	16.2억원	8.0억원	10.0억원	10.0억원	15.0억원
지원사업	150개	167개	100개	110개	116개	154개
평균지원액	1,000만원	1,000만원	800만원	900만원	900만원	974만원

자료 : 인천광역시 (2017), 내부자료.

❖ 지역별·연도별 비영리민간단체의 현황

- 2000년에 제정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근거하여 142개의 비영리민간단체가 인천광역시에 등록되었음. 2001년부터 2017년 평균 31.2개의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 되었음.
- 남동구는 2001년부터 2017년 동안 매년 평균 15.7개의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되었음. 미추홀구⁵⁾는 매년 평균 5.2개, 부평구는 5.1개의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반면, 가장 적은 증가율을 보인 기초단체는 옹진군으로 같은 기간 매년 0.1개의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되었음. 다음으로 동구(0.5개), 강화군(1.3개), 계양구(1.8개) 순으로 조사되었음.

2,038개)와 비교하면, 단체수로 보았을 때 1/3 수준임. 한편, 1개 단체에 제공된 평균 지원금은 1,322만원~1,696만원으로 인천시에서 제공한 평균지원금(800만원~1,000만원)보다 다소 높았음. 즉, 인천시가 상대적으로 많은 비영리민간단체에 적은 금액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또한, 인천시의 공익활동지원금 사업비 명목의 보조금 제공에 한정하고 있는 반면, 서울시는 보조금 지원뿐만 아니라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교육·상담·공간지원·네트워킹 등을 통해서도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있음(김정욱·진성만, 2017).

5) 인천광역시 남구가 2018년 7월 1일부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로 명칭을 변경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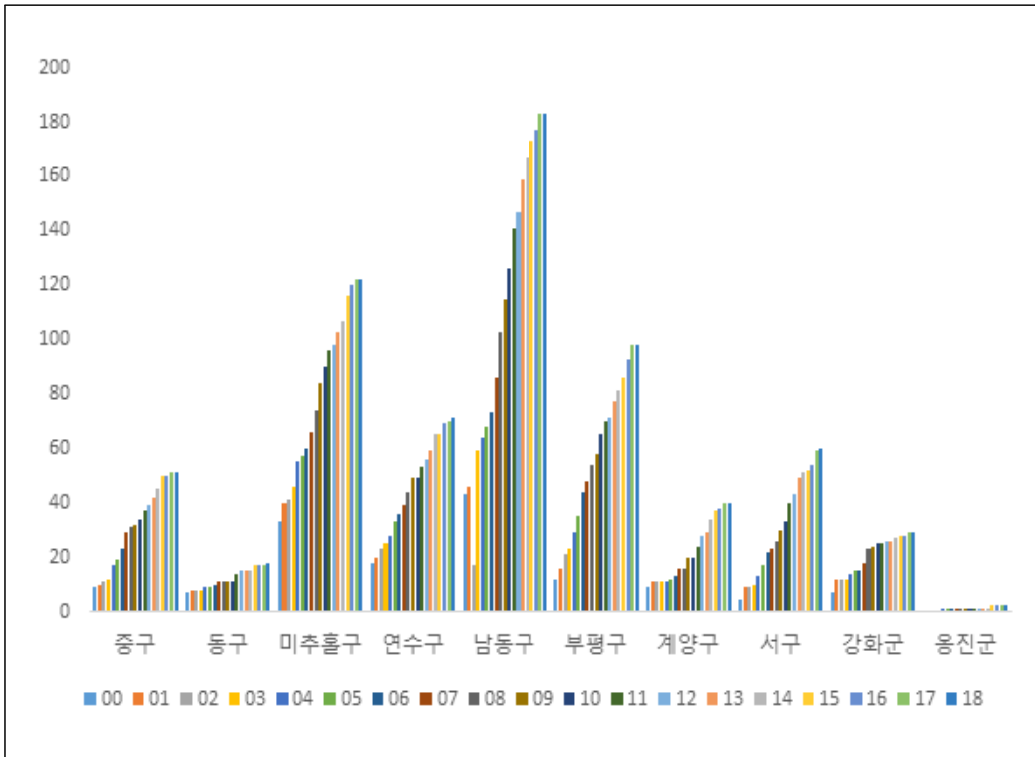
〈표 4〉 지역별·연도별 인천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의 수

(단위: 개)

구분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계
중구	9	1	1	1	5	2	4	6	2	1	2	3	2	3	3	5	-	1	-	51
동구	7	1	-	-	1	-	1	1	-	-	-	3	1	-	-	2	-	-	1	18
미추홀구	33	7	1	5	9	2	3	6	8	10	6	6	2	5	4	9	4	2	-	122
연수구	18	2	3	2	3	5	3	3	5	5	-	4	3	3	6	-	4	1	1	71
남동구	43	3	1	12	5	4	5	13	17	12	11	15	6	12	8	6	4	6	-	183
부평구	12	4	5	2	6	6	9	4	6	4	7	5	1	6	4	5	7	5	-	98
계양구	9	2	-	-	-	1	1	3	-	4	-	4	4	1	5	3	1	2	-	40
서구	4	5	-	1	3	4	5	1	3	4	3	7	3	6	2	1	2	5	1	60
강화군	7	5	-	-	2	1	-	3	5	1	1	-	1	-	1	1	-	1	-	29
옹진군	-	-	-	-	1	-	-	-	-	-	-	-	-	-	-	1	-	-	-	2
계	142	30	11	23	35	25	31	40	46	41	30	47	23	36	33	33	22	23	3	674

주: 각 칸의 수치는 당해연도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수를 의미함.

자료: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 (2018), 비영리단체현황(인천시, 2018년 2월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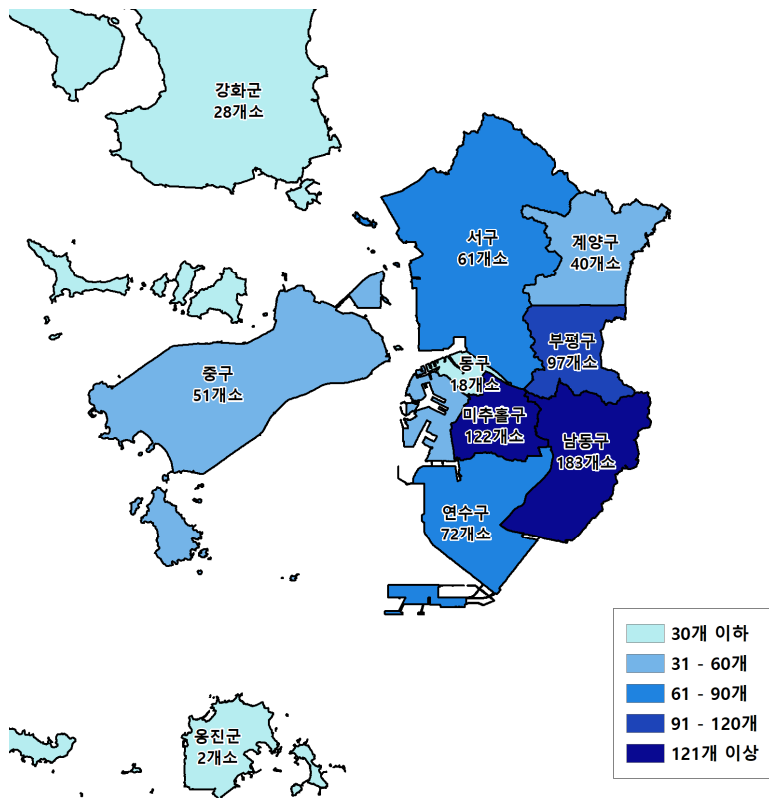


〈그림 2〉 지역별·연도별 비영리민간단체의 수

자료: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 (2018), 비영리단체현황(인천시, 2018년 2월 현재).

❖ 인천광역시 군·구별 비영리민간단체의 현황

- (2018년 2월 기준)인천광역시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현황을 살펴보면, 단체의 수는 674개이고, 인구 1,000명 대비 인천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의 수는 0.228개임(1개소당 인구수는 4,379명).
- 남동구가 183개로 가장 많았으며, 미추홀구(122개), 부평구(98개) 순으로 나타났음. 강화군은 29개, 동구는 18개, 옹진군은 2개의 비영리민간단체가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그림 3> 참고).
- 인구 1,000명당 비영리민간단체의 수는 중구가 0.431개로 가장 많았으며, 강화군(0.422개), 남동구(0.340개), 미추홀구(0.292개), 동구(0.262개) 순으로 조사되었음(<그림 4> 참고). 계양구(0.125개), 서구(0.115개), 옹진군(0.093개)은 인구 1,000명당 비영리민간단체의 수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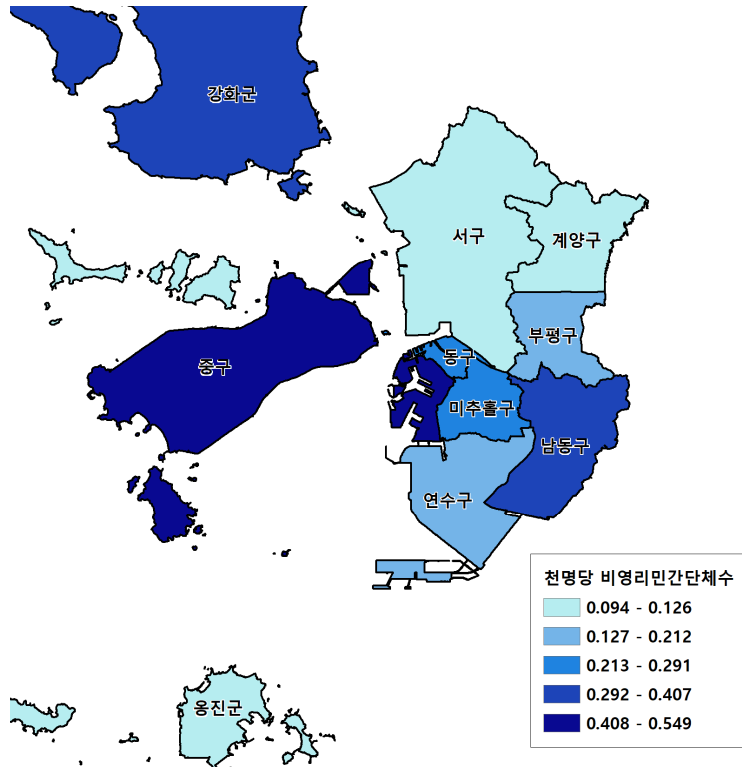
<그림 3> 인천광역시 군·구별 비영리민간단체의 수

〈표 5〉 인천광역시 군·구별 비영리민간단체의 수

구	비영리민간단체 수	인구수	인구 1,000명당 비영리민간단체 수
인천시	674개	2,951,629명	0.228개
중구	51개	118,263명	0.431개
동구	18개	68,689명	0.262개
미추홀구	122개	418,229명	0.292개
연수구	71개	338,832명	0.210개
남동구	183개	537,496명	0.340개
부평구	98개	536,077명	0.183개
계양구	40개	320,872명	0.125개
서구	60개	523,049명	0.115개
강화군	29개	68,716명	0.422개
옹진군	2개	21,406명	0.093개

주 : 행정안전부 자료에 주소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단체의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을 참고하였음. 비영리민간단체 1개소 당 인구수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임.

자료 : 행정안전부 (2018.02)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 비영리단체현황(인천시); 행정안전부(2018.02), 주민등록 인구통계(주민등록 인구 및 세대현황: 인천시).



〈그림 4〉 인천광역시 군·구별 비영리민간단체의 수(인구 1,000명당)

■ 인천광역시청 부서별 비영리민간단체의 현황

- 인천광역시청의 부서별로 살펴보면,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104개)는 인천광역시 전체 비영리민간단체의 15.4%가 등록되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77개, 11.4%),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67개, 9.9%),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66개, 9.8%) 순으로 조사되었음.

〈표 6〉 담당부서별 비영리민간단체의 수

담당실/국	담당과	계
감사관		1개
교통국	광역교통정책관(변경)	10개
기획조정실	교육지원담당관(변경)	11개
	정보통신보안담당관실	2개
	정보화담당관실	1개
	정책기획관실	9개
대변인실		4개
도시계획국	건축계획과	3개

담당실/국	담당과	계
도시균형건설국	건설심사과	2개
	도로과	2개
	주거환경정책과(변경)	4개
문화관광체육국	관광진흥과	1개
	문화예술과	104개
	문화재과	49개
	체육진흥과	7개
보건복지국	건강증진과	2개
	다문화정책과(변경)	12개
	보건정책과	4개
	사회복지봉사과(변경)	57개
	위생안전과	1개
	장애인복지과	35개
여성가족국	노인정책과	21개
	보육정책과(변경)	5개
	아동청소년과	66개
	여성정책과	24개
일자리경제국	경제정책과(변경)	3개
	사회적경제과	2개
	생활경제과(변경)	5개
	일자리정책과(변경)	17개
재난안전본부	비상대책과	4개
	안전정책과	8개
	안전총괄과(변경)	1개
	재난관리과(변경)	2개
투자유치산업국	농축산유통과	13개
	산업진흥과	12개
해양항공국	항만공항정책과(변경)	1개
	해양도서정책과	7개
행정관리국	인사과	2개
	자치행정과	77개
	총무과	1개
환경녹지국	공원녹지과	5개
	수질환경과	5개
	자원순환과	4개
	환경정책과	67개
미지정		1개
계		674개

자료 :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 (2018), 비영리단체현황(인천시).

■ 인천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분야별 현황

-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 분야별로 분석하였음. 활동 분야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주요 사업이나 활동내용을 기초로 분석하였고, 문화·예술·체육, 복지/보건, 생태·환경 등 총 20개 분야로 정리하였음.
- 문화·예술·체육 분야가 105개(15.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다음으로 복지·보건(13.0%), 생태·환경(12.5%), 아동·청소년(10.5%) 순으로 나타남.

〈표 7〉 인천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활동분야별 수

분야	단체(개)	비율(%)	분야	단체(개)	비율(%)
문화·예술·체육	105	15.6	봉사활동	16	2.4
복지·보건	88	13.1	재난·안전	14	2.1
생태환경	84	12.5	교육	13	1.9
아동·청소년	71	10.5	다문화·국제·인권	13	1.9
역사·문화재	53	7.9	교통	12	1.8
특별	46	6.8	평화·통일	11	1.6
산업/경제	38	5.6	농·축산	7	1.0
안보	30	4.5	권력감시	6	0.9
자치·행정	21	3.1	가정	6	0.9
여성	19	2.8	기타	21	3.1
소계				674	100.0

주 : '특별'분야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새마을운동조직·한국자유총연맹 등 특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단체를 의미함.

자료 : 행정안전부 (2018.02)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 비영리단체현황(인천시)

Ⅲ

인천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설문조사

Ⅲ. 인천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설문조사

1. 조사의 설계

1) 조사의 목적

- 본 설문조사의 목적은 인천광역시의 공익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임.
- 설문지는 활동 내용 및 일반현황, 공익활동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음. 설문문항은 인천시 공익활동지원, 타 지역 비영리민간단체 현황조사, 비영리민간단체관련 이론 등을 참고하여 구성하였음.

2) 설문조사 설계

- 본 설문조사는 인천광역시의 공익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초조사로서 비영리민간단체의 조직 및 일반현황, 활동 및 운영 현황, 거버넌스 및 네트워크, 그리고 공익활동 지원정책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설문조사의 모집단은 인천광역시에 등록되어 활동한 지 1년 이상인 (2018년 3월 기준) 비영리민간단체이며, 모집단의 규모는 비영리민간단체 655개임.⁶⁾
- 설문조사 결과의 정확성과 일반화를 확보하고,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층화추출방법을 활용하여 표본추출을 하였음(Singleton & Straits, 2010). 층화추출의 방법은 인천광역시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였고, 최종 설문조사의 규모는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150개의 비영리민간단체임.⁷⁾

6) 행정안전부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비영리민간단체 자료를 바탕으로 모집단을 설정하였음(<https://npas.mois.go.kr>).

-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하여 기관방문 면접조사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⁸⁾ 설문조사에 응답한 비영리민간단체는 150개, 거절한 비영리민간단체는 114개로 최종 응답률은 56.8%임.⁹⁾
- 설문조사는 2018년 4월 9일부터 5월 10일까지 “코리아 데이터 월드”를 통해 수행되었음.

〈표 8〉 설문조사 개요

구분	내용
조사 대상	2018년 3월 인천시에 등록되어 1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조사 규모	150개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기관방문 면접조사
표본추출 방법	인천시 등록일을 기준으로 층화추출
조사 기간	2018년 4월 9일 ~ 5월 10일
응답률	56.8%(150개/264개)
조사 기관	코리아 데이터 월드

3) 조사의 내용

- 설문조사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일반현황, 운영 및 조직, 거버넌스 및 네트워크, 공익활동 지원정책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구체적인 설문 문항은 다음의 〈표 9〉과 같음.
 -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일반현황으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 분야와 내용, 의견수렴과정, 공익활동 수행 시 어려운 점 등이 있음.
 - 비영리민간단체의 운영 및 조직에 대한 내용으로는 인사 및 조직에 대한 일반사항, 의사결정단위, 예산 및 지출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거버넌스 및 네트워크에 대한 문항으로는 협력기관, 협력의 내용 및 방식, 등으로 구성되었음.

7) 표본추출을 위해 모집단을 등록일 기준으로 4개의 작은 집단으로 나누었음. 첫 번째 집단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설문조사를 거절하거나 부재중·결번·법인형태 변경 등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두 번째 집단에서 기존에 계획되었던 비영리민간단체의 인천시 등록일과 동일하거나 가장 근접한 비영리민간단체에 연락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두 번째 집단에서도 설문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집단에 속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음.

8) 기관방문 면접조사가 불가능하거나 우편으로 대체하기를 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전자우편으로 설문지를 발송한 후, 설문조사를 완료하고 FAX나 전자우편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였음.

9) 설문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총 507개의 비영리민간단체에 연락을 하였음. 설문조사에 응하거나 거절한 비영리민간단체는 264개이며, 폐업(6개 단체), 다른 형태의 법인으로 변경(30개 단체), 결번(123개 단체), 부재중(84개) 등임.

- 공익활동 지원정책에 대한 내용은 보조금 지원사업의 경험 유·무, 개선이 필요한 사항,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프로그램 등임.

〈표 9〉 설문지 구성

구분	설문문항
단체의 일반현황	• 설립년도, 등록시기
단체의 활동	• 활동 분야 및 방식 • 조직의 형태 • 애로사항
단체의 운영 및 조직	• 의사결정 구조 및 방식 • 홈페이지·소셜미디어 운영 여부 • 정보의 공개 • 재정 현황 • 임원·상근직원·비상근직원·자원봉사자·회원 수 • 대표자에 대한 사항
거버넌스 및 네트워크	• 연대·협력의 대상 및 방식
공익활동 지원정책	• 지원사업 참여 여부 • 지원정책 만족도 • 지원정책 개선분야 • 지원정책의 내용 •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분야

2. 인천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기초조사 분석결과

1) 설문참여 단체의 일반특성

- 인천시에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중 150개의 단체가 설문조사에 참여하였음.
- 설립시기로 살펴보면, 2001~2010년(39.2%)에 설립하여 활동 중인 비영리민간단체가 가장 많았으며, 1991~2000년(23.0%), 1981~1990년(18.2%) 순임.
- 등록시기로는 2006~2010년(29.3%)과 2011년 이후(29.3%)가 가장 많았으며, 2000년 이전(22.0%), 2001~2005년(19.3%)로 조사되었음.
- 지역별로 살펴보면, 남동구(28.0%)가 가장 많았으며, 미추홀구(22.7%), 부평구(13.3%), 서구(10.0%), 중구(9.3%) 순으로 나타났음.

<표 10> 설문응답 비영리민간단체 일반현황

단위 : 빈도는 개, 비율은 %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설립시기	1980년 이전	12	8.1	소재지역	동구	6	4.0
	1981~1990년	27	18.2		미추홀구	34	22.7
	1991~2000년	34	23.0		중구	14	9.3
	2001~2010년	58	39.2		남동구	42	28.0
	2011년 이후	17	11.5		서구	15	10.0
	계	148	100.0		계양구	5	3.3
등록시기	2000년 이전	33	22.0		부평구	20	13.3
	2001~2005년	29	19.3		연수구	8	5.3
	2006~2010년	44	29.3		강화군	6	4.0
	2011년 이후	44	29.3		옹진군	-	-
	계	150	100.0		계	150	100.0

주 : 설립시기 항목에 대해 비영리민간단체 2곳이 '무응답'임.

2) 비영리민간단체의 주요 활동

■ 주요 활동 분야

- '문화·예술·체육'을 주요활동 분야로 응답한 비영리민간단체가 52개(13.9%)로 가장 많았음. '교육'(49개, 13.1%), '봉사활동'(48개, 12.8%), '아동·청소년·청년'(39개, 10.4%)에 대한 활동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그 외에도 '생태·환경'(23개, 6.1%), '노인'(21개, 5.6%), '지역공동체·주민자치'(20개, 5.3%), '보건·복지'(18개, 4.8%), '평화·통일'(17개, 4.5%), '다문화·국제·인권'(17개, 4.5%), 그리고 '여성'(16개, 4.3%) 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11> 설문응답 비영리민간단체 활동 분야

단위 : 빈도는 개, 비율은 %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교육	49	13.1	사회적경제	6	1.6
권력감시	5	1.3	지역공동체·주민자치	20	5.3
노동·빈민	7	1.9	자치·행정	6	1.6
모금·배분	5	1.3	소비자권리	3	0.8
노인	21	5.6	문화·예술·체육	52	13.9
보건·복지	18	4.8	생태·환경	23	6.1
의료	2	0.5	국제연대	2	0.5
여성	16	4.3	평화·통일	17	4.5
아동·청소년·청년	39	10.4	종교	8	2.1
다문화·국제·인권	17	4.5	도시·교통	5	1.3
봉사활동	48	12.8	연구·조사	6	1.6
계			375 100.0		

주 : 복수응답 항목임.

■ 활동내용

- 설문조사에 참여한 비영리민간단체는 수요-도구 측면(〈표 1 참고〉)에서의 활동내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53.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비영리민간단체의 주요 활동내용 으로는 ‘교육·강연회 개최’(26.9%), ‘음악회·전시회·축제 개최’(15.4%), ‘물품·서비스 제공’(9.8%) 등의 활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전달하는 기능(Advocacy)으로 수요-표현 측면의 활동은 전체 활동 중 20.5%로 조사되었음. 구체적으로는 ‘각종 토론회·캠페인 개최’(9.4%), 정보 제공 및 의견수렴·전달(6.4%), 공공기관과의 공식·비공식적 접촉(3.4%), 시위·집회·서명운동 등(1.7%), 공청회·청문회 등 회의참여(1.3%) 등임.
- 공급-도구 측면에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비교적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공급-도구 측면의 활동으로는 ‘사회혁신·공익활동을 위한 활동가 양성’(11.1%), 사회혁신·공익활동을 위한 공간제공(2.1%) 등 으로 조사되었음.
- 공급-표현 측면의 활동인 자원봉사자 모집(9.4%), ‘모금·자원 배분’(3.0%)은 다소 취약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12〉 비영리민간단체의 주요 활동 내용

단위: 개

구분		빈도	비율
수요-도구	물품·서비스의 제공	23	9.8%
	음악회·전시회·축제 등 개최	36	15.4%
	교육·강연회 등 개최	63	26.9%
수요-표현	정보 제공 및 시민의견 수렴·전달	15	6.4%
	공청회·청문회 등 회의 참여	3	1.3%
	각종 토론회·캠페인 등 개최	22	9.4%
	공공기관과의 공식·비공식적 접촉	8	3.4%
	시위·집회·서명운동 등	4	1.7%
공급-도구	사회혁신·공익활동을 위한 활동가 양성	26	11.1%
	사회혁신·공익활동을 위한 공간제공	5	2.1%
공급-표현	모금·자원 배분	7	3.0%
	자원봉사자 모집	22	9.4%
계		234	100.0%

주: 복수응답 항목임.

3) 비영리민간단체의 운영 및 조직

❖ 직원 및 회원 현황

- 직원 및 회원에 대한 내용은 임원의 수, 상근직원의 수, 비상근직원의 수, 회원의 수, 자원봉사자의 수 등을 조사하였음.
- 임원은 '11명 이상'(30.0%)이 가장 많았으며, 3~5명(29.3%), '6~10명'(23.3%) 순으로 나타났다. 상근직원은 '1~2명'(47.3%)이 가장 많았으며, '상근직원이 없다'고 응답한 비영리민간단체도 21개(14.3%)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비상근직원은 '없음'이라고 응답한 단체가 절반 이상(52.4%)이며, 비상근직원이 있을 경우 '1~2명'(23.8%)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음. 많은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임원의 수는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설문조사에 참여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상당수는 직원의 규모로 보았을 때 매우 영세한 것으로 판단됨.
- 회원은 '101명 이상'(45.9%)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으며, 회원이 없다고 응답한 단체도 9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자원봉사자는 '없음'(26.7%)의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자원봉사자가 있다고 응답한 경우 '101명'(26.0%)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음.

〈표 13〉 직원 및 회원현황

단위 : 빈도는 개, 비율은 %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임원	없음	3	2.0	회원	없음	9	6.2
	1~2명	23	15.3		1~10명	10	6.9
	3~5명	44	29.3		11~30명	22	15.1
	6~10명	35	23.3		31~50명	20	13.7
	11명 이상	45	30.0		51~100명	18	12.3
	계	150	100.0		101명 이상	67	45.9
상근직원	없음	21	14.3	계	146	100.0	
	1~2명	70	47.3	자원봉사자	없음	39	26.7
	3~5명	41	27.9		1~10명	22	15.1
	6~10명	12	8.2		11~30명	22	15.1
	11명 이상	4	2.7		31~50명	9	6.2
	계	148	100.0		51~100명	16	11.0
비상근직원	없음	77	52.4		101명 이상	38	26.0
	1~2명	35	23.8	계	146	100.0	
	3~5명	23	15.6				
	6~10명	4	2.7				
	11명 이상	8	5.4				
	계	147	100.0				

주 : 상근직원 항목에 대해 비영리민간단체 2곳이, 비상근직원에 대해서는 3개의 단체가, 회원과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4개의 단체가 응답하지 않았음.

■ 회원의 성별 분포

- 회원의 성별에 대해서는 여성의 비중이 많은 단체(75개)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여성의 비율이 '51~70%', '71~90%'라고 응답한 비영리민간단체가 각각 26.5%, 17.0%로 같은 구간에서 남성의 비율(14.3%, 11.65%)보다 더 높게 나타났음.
- 회원의 연령별로 살펴보면, '50대'가 회원의 30% 이상 차지하는 단체가 42.9%로 50대의 비영리민간단체 참여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이며, '60대'가 회원의 30%이상인 단체가 33.3%, '40대'가 23.1%, '30대'와 '20대 이하'가 각각 8.2%로 조사되었음.
 - 회원의 연령분포가 '0~10%'에 해당하는 응답이 '20대 이하'(83.0%)와 '30대'(69.4%)가 높은 것으로 보아 30대 이하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판단됨.

<표 14> 회원의 성별 분포

단위 : 개, ()안은 %

구분		0~10%	11~30%	31~50%	51~70%	71~90%	91~100%	계
성별	남성	15 (10.2)	34 (23.1)	45 (30.6)	21 (14.3)	17 (11.6)	15 (10.2)	147 (100.0)
	여성	20 (13.6)	17 (11.6)	35 (23.8)	39 (26.5)	25 (17.0)	11 (7.5)	
연령	20대 이하	122 (83.0)	13 (8.8)	3 (2.0)	3 (2.0)	5 (3.4)	1 (0.7)	
	30대	102 (69.4)	33 (22.4)	10 (6.8)	2 (1.4)	-	-	
	40대	58 (39.5)	55 (37.4)	27 (18.4)	3 (2.0)	1 (0.7)	3 (2.0)	
	50대	36 (24.5)	48 (32.7)	41 (27.9)	17 (11.6)	5 (3.4)	-	
	60대 이상	62 (42.2)	36 (24.5)	24 (16.3)	10 (6.8)	5 (3.4)	10 (6.8)	

주 : 무응답 3개 단체

■ 홈페이지 · 소셜미디어(SNS) 운영 여부

- 홈페이지를 운영하거나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운영 유무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영리민간단체가 105개(70.0%)로 많았으며, 소셜미디어(SNS)의 계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46.7%)한 단체보다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단체(53.3%)가 더 많았음.

<표 15> 홈페이지 · 소셜미디어(SNS)계정 운영 유무

단위 : 개, ()안은 %

구분	있음	없음	계
홈페이지	105(70.0)	45(30.0)	150 (100.0)
소셜미디어(SNS)	70(46.7)	80(53.3)	

■ 비영리민간단체 대표자관련 일반사항

- 설문조사에 참여한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자는 ‘남성’(79.8%)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연령과 관련해서는 ‘51~60세(41.8%)’가 대표자인 단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며, ‘61~70세’(34.2%)가 대표자인 단체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대표자의 학력이 ‘학사(34.6%)’와 ‘석사(31.4%)’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표자인 단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됨. 대표자의 직업으로는 ‘자영업’(20.8%), ‘문화·예술·스포츠직’(17.9%), ‘관리자’(14.5%) 순으로 많았음.
- 대표자가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한 기간은 ‘5년 미만(44.8%)’, ‘5~10년’(31.3%)이 높았으며, 대표자로서의 임기기간도 ‘5년 미만’(46.6%), ‘5~10년’(32.5%) 순임. 대표자의 수는 ‘1명’이 94.7%로 가장 많았음.

〈표 16〉 대표자관련 일반사항

단위 : 빈도는 개, 비율은 %

구분		빈도	비율	구분		빈도	비율
성별	남성	130	79.8	대표자의 수	1명	142	94.7
	여성	33	20.2		2명	3	2.0
	계	163	100.0		3명	4	2.7
연령	40세 이하	2	1.3		4명	1	0.7
	41~50세	13	8.2		계	150	100.0
	51~60세	66	41.8	관리자	25	14.5	
	61~70세	54	34.2	사회복지·보건직	16	9.2	
	71세 이상	23	14.6	종교인	14	8.1	
	계	158	100.0	연구·교육 전문가	15	8.7	
학력	고졸 이하	24	15.1	직업	법률·행정 전문가	3	1.7
	전문학사	11	6.9		금융·회계전문가	3	1.7
	학사	55	34.6		문화·예술·스포츠직	31	17.9
	석사	50	31.4		사무직	3	1.7
	박사	19	11.9		기술직	7	4.0
	계	159	100.0		자영업	36	20.8
	활동기간	5년 미만	73		44.8	주부·학생	5
5~10년		51	31.3		기타	15	8.7
11~20년		30	18.4		계	173	100.0
21~30년		7	4.3		5년 미만	76	46.6
31년 이상		2	1.2	5~10년	53	32.5	
계		163	100.0	11~20년	26	16.0	
임기기간	5년 미만	73	44.8	21~30년	6	3.7	
	5~10년	51	31.3	31년 이상	2	1.2	
	11~20년	30	18.4	계	163	100.0	
	21~30년	7	4.3				
	31년 이상	2	1.2				
	계	163	100.0				

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단체의 경우, 모든 대표자의 정보를 포함하였음. 복수의 직업을 갖는 대표자가 있기 때문에 직업에 대한 항목에 응답한 빈도수가 다른 항목보다 높음.

❖ 비영리민간단체의 조직 형태

- 설문에 참여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조직 형태로 ‘인천지역 독립조직’(5.20%)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전국단위 지부조직’(30.7), ‘전국단위 독립조직’(12.0%), ‘전국단위 연대조직’(5.3%) 순임
- 2000년 이전 등록단체의 경우 ‘전국단위 지부조직’(60.6%)이 비율이 높았으나, 2001년 이후로는 인천지역의 독립조직(53.6~68.2%)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17> 응답 단체의 조직 형태

단위 : 개, ()안은 %

구분	인천지역 독립조직	전국단위 지부조직	전국단위 독립조직	전국단위 연대조직	계	
전체	78 (52.0)	46 (30.7)	18 (12.0)	8 (5.3)	150 (100.0)	
등록 시기	2000 이전	5 (15.2)	20 (60.6)	6 (18.2)	2 (6.1)	33 (22.0)
	2001~2005	15 (53.6)	10 (35.7)	1 (3.6)	2 (7.1)	28 (18.7)
	2006~2010	30 (68.2)	8 (18.2)	4 (9.1)	2 (4.5)	44 (29.3)
	2011 이후	28 (62.2)	8 (17.8)	7 (15.6)	2 (4.4)	45 (30.0)

주 : Chi-square=30.118, p-value=.001

❖ 주요한 의사결정 주체

- 주요한 의사결정 단위로 ‘이사회’(45.8%)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표 및 실무자 회의’(25.2%), ‘대표자’(12.3%) 순으로 조사되었음.

<표 18> 주요 의사결정 단위

단위 : 개, ()안은 %

구분	이사회	대표자	실무자 회의	대표 및 실무자 회의	총회	기타	계
의사결정 단위	71 (45.8)	19 (12.3)	11 (7.1)	39 (25.2)	13 (8.4)	2 (1.3)	155 (100.0)

주 : 복수응답 항목임. 기타항목은 ‘사안마다 다름’임.

❖ 임원회의 및 총회 개최

- 2017년 임원회의의 개최 빈도로 ‘분기별 1회’(38.0%), ‘1달에 1회’(34.7%)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음. ‘6개월에 1회’(22.0%)로 개최하고 있는 단체도 일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19> 임원회의(2017년) 개최 빈도

단위 : 개, ()안은 %

구분	일주일 1회 이상	2주에 1회	1달에 1회	분기별 1회	6개월에 1회	계
임원회의 개최 빈도	3 (2.0)	5 (3.3)	52 (34.7)	57 (38.0)	33 (22.0)	150 (100.0)

- 총회 개최 빈도로 ‘1년에 1회’(52.7%)에 대한 응답이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음. 그 다음으로 ‘한 달에 1회 이상’(18.7%), ‘분기별 1회’(16.7%), ‘6개월에 1회’(12.0%) 순임

<표 20> 총회 개최 빈도

단위 : 개, ()안은 %

구분	한달에 1회 이상	분기별 1회	6개월에 1회	1년에 1회	계
총회 개최 빈도	28 (18.7)	25 (16.7)	18 (12.0)	79 (52.7)	150 (100.0)

❖ 의견수렴과정 진행 여부 및 빈도

- 지역사회 주요쟁점 및 수요 확인을 위한 의견수렴과정을 진행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진행하지 않는다’(72.7%)는 비영리민간단체가 많았음.

<표 21> 주요쟁점 및 수요 확인을 위한 의견수렴과정 진행 여부

단위 : 개, ()안은 %

구분	있음	없음	계
주요쟁점·수요확인 위한 의견수렴과정	41 (27.3)	109 (72.7)	150 (100.0)

- 의견수렴과정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6개월에 1회 이하’(41.5%)에 대한 응답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의견수렴과정을 갖는지’의 여부와 빈도 등에 조사결과를 보면, 지역사회의 주요 쟁점이나 수요 등을 확인하기 위한 소통과정이 부족한 것으로 보임.

<표 22> 의견수렴과정의 빈도

단위 : 개, ()안은 %

구분	일주일에 1회 이상	2주일에 1회	1달에 1회	분기별 1회	6개월에 1회 이하	계
의견수렴 과정	1 (2.4)	1 (2.4)	16 (39.0)	6 (14.6)	17 (41.5)	41 (100.0)

❖ 운영 및 활동 외부 공개

-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공개한다’(77.3%)가 대다수임.

〈표 23〉 활동 및 운영 내용 외부공개 여부

단위 : 개, ()안은 %

구분	공개	비공개	계
활동 및 운영사항 외부 공개	116 (77.3)	34 (22.7)	150 (100.0)

- 활동 및 운영 내용을 외부공개하는 매체로는 ‘홈페이지·블로그 등’(37.2%)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음. ‘총회보고서’(18.9%), ‘소식지’(15.9%), ‘정기 간행물’(15.2%) 순으로 나타났음.

〈표 24〉 활동 및 운영 내용 외부공개 매체

단위 : 개, ()안은 %

구분	정기 간행물	소식지	총회 보고서	홈페이지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 (SNS)	계
활동·운영 공개매체	25 (15.2)	26 (15.9)	31 (18.9)	61 (37.2)	21 (12.8)	164 (100.0)

주 : 복수응답 항목임.

❖ 예산

- 설문조사에 참여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주된 수입원으로는 ‘회비’(29.6%)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기부금’(21.5%), ‘정부사업 보조금’(21.0%) 등으로 조사되었음.

〈표 25〉 응답단체의 주된 수입원

단위 : 개, ()안은 %

구분	회비	기부금	정부사업 보조금	기업 후원금	용역·서비스 수입	자체 수익사업	기타	계
주요 수입원	107 (29.6)	78 (21.5)	76 (21.0)	24 (6.6)	18 (5.0)	47 (13.0)	12 (3.3)	362 (100.0)

주 : 복수응답 항목임. 기타에는 ‘본인 부담금’, ‘본회 지원금’ 등의 의견이 포함됨.

❖ 예산 규모 및 내역

- 2017년 예산 규모로는 ‘1억 1만원~5억원’(31.3%)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1,001~5000만원’(26.0%), ‘1,000만원 이하’(20.6%), ‘5,000만원~1억원’(18.3%) 순임.

<표 26> 2017년도 예산 규모

단위: 개, ()안은 %

구분	1,000만원 이하	1,001~5,000만원	5,001만원~1억원	1억 1만원~5억원	5억 1만원 이상	계
예산	27 (20.6)	34 (26.0)	24 (18.3)	41 (31.3)	5 (3.8)	131 (100.0)

○ 항목별 지출 규모로는 사업비는 ‘1,001~5,000만원’(32.8%)이라고 응답한 비영리민간단체가 많았으며, 운영비는 ‘500만원 이하’(39.7%), ‘1,001~5,000만원’(35.9%), 인건비는 ‘500만원 이하’(45.0%)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음.

- 운영비와 인건비에 500만원 이하로 지출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아 상당수의 비영리민간단체의 규모가 영세하거나 활동가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됨.

<표 27> 2017년도 항목별 지출 규모

단위: 개, ()안은 %

구분	500만원 이하	501~1,000만원	1,001만원~5,000만원	5,000만원~1억원	1억 1만원 이상	계
사업비	27 (20.6)	21 (16.0)	43 (32.8)	24 (18.3)	16 (12.2)	131 (100.0)
운영비	52 (39.7)	22 (16.8)	47 (35.9)	4 (3.1)	6 (4.6)	
인건비	59 (45.0)	9 (6.9)	37 (28.2)	12 (9.2)	14 (10.7)	

■ 예산 및 재정 집행 내역 외부 공개 여부

○ 예산 및 재정 집행 내역의 외부에 공개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공개한다’(56.0%)가 더 많았으나 ‘활동 및 운영에 대한 공개(<표 23> 참고)’보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28> 예산 및 재정 집행 내역 외부공개 여부

단위: 개, ()안은 %

구분	공개	비공개	계
예산 및 재정 외부 공개	84 (56.0)	66 (44.0)	150 (100.0)

○ 예산 및 재정 집행 내역을 공개하기 위한 매체로는 ‘총회 보고서’(50.0%) 또는 ‘홈페이지·블로그 등’(25.0%)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29> 예산 및 재정 집행 내역 외부공개 매체

단위: 개, ()안은 %

구분	정기 간행물	소식지	총회 보고서	홈페이지 블로그 등	소셜미디어 (SNS)	기타	계
활동·운영 공개매체	9 (9.0)	4 (4.0)	50 (50.0)	25 (25.0)	3 (3.0)	9 (9.0)	100 (100.0)

주: 기타로는 운영보고서, 총회, 분기별 회의, 사무실 게시판 등으로 조사됨.

공익활동 수행과정의 어려움

- 공익활동 수행과정 상에서 겪는 한계 및 어려움에 대해서 설문에 참여한 비영리민간 단체는 ‘예산 부족’(4.18)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직원 부족’(3.75), ‘지원기관제도 부족’(3.77)에 대한 어려움도 상당한 것으로 보임. ‘자원봉사자 부족’과, ‘공간 확보의 어려움’(각각 3.46), ‘홍보의 어려움’(3.38)과 관련해서도 비교적 어려움을 갖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30> 공익활동 수행 시 한계 또는 어려움

단위: 단체, ()안은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점)
불충분성	직원의 부족	8 (5.3)	8 (5.3)	31 (20.7)	70 (46.7)	33 (22.0)	3.75
	자원봉사자의 부족	10 (6.7)	15 (10.0)	41 (27.3)	64 (42.7)	20 (13.3)	3.46
	예산의 부족	4 (2.7)	2 (1.3)	16 (10.7)	69 (46.0)	59 (39.3)	4.18
	공간 확보의 어려움	8 (5.3)	21 (14.0)	45 (30.0)	46 (30.7)	30 (20.0)	3.46
아마추어리즘	사업기획·전략에 한계	7 (4.7)	33 (22.0)	50 (33.3)	49 (32.7)	11 (7.3)	3.16
	장기전망이나 지속가능성의 부재	6 (4.0)	32 (21.3)	46 (30.7)	51 (34.0)	15 (10.0)	3.25
	홍보의 어려움	2 (1.3)	27 (18.0)	46 (30.7)	62 (41.3)	13 (8.7)	3.38
	협력의 어려움	5 (3.3)	45 (30.0)	51 (34.0)	38 (25.3)	11 (7.3)	3.03
온정주의	정부 지원사업 수행으로 단체 고유업무 수행의 어려움	10 (6.7)	31 (20.7)	50 (33.3)	46 (30.7)	13 (8.7)	3.14
배타주의	회원들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움	7 (4.7)	36 (24.0)	61 (40.7)	42 (28.0)	4 (2.7)	3.00
	수혜지역·대상 확대의 어려움	6 (4.0)	34 (2.7)	58 (38.7)	43 (28.7)	9 (6.0)	3.10
지원제도·기관이 부족		4 (2.7)	14 (9.3)	35 (23.3)	56 (37.3)	41 (27.3)	3.77
중복수혜자의 발생		18 (12.0)	46 (30.7)	48 (32.0)	30 (20.0)	8 (5.3)	2.76

주: 모든 항목의 응답자 수는 150명임.

- 비영리실패이론과 관련하여 직원의 부족, 자원봉사자의 부족, 예산의 부족, 공간 확보의 어려움 등의 불충분성(Voluntary Insufficiency)와 관련된 어려움(3.46~4.18점)에 대한 평균점수가 높았음. 전문성과 관련된 아마추어리즘(Voluntary Amateurism)에 대한 어려움의 정도는 3.03~3.16점으로 불충분성보다는 많이 낮았음. 정부 지원사업 수행으로 부터 오는 어려움(3.14점)의 온정주의(Paternalism)와 다양한 요구에 대한 대응(3.00점)과 수혜지역 및 대상 확대(3.10점) 등의 배타주의(Particularism)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갖지 않거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4) 인천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의 거버넌스 및 네트워크

▣ 주요 협력기관

- 설문조사에 참여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주요 협력하고 있는 단체로는 ‘인천광역시’ (25.6%)가 가장 많았으며, ‘자치군·구청’(18.6%), ‘비영리민간단체’(16.6%) 순으로 나타났음.
 - 가장 많이 협력하고 있는 단체(1순위)로 범위를 좁혔을 때도 ‘인천광역시’(42.3)가 가장 협력을 많이 하는 단체로 조사되었으며, ‘자치 군·구청’(14.1%)과 ‘비영리민간단체’ (13.4%) 순으로 조사되었음.

〈표 31〉 비영리민간단체의 주요 협력기관

단위 : 개, ()안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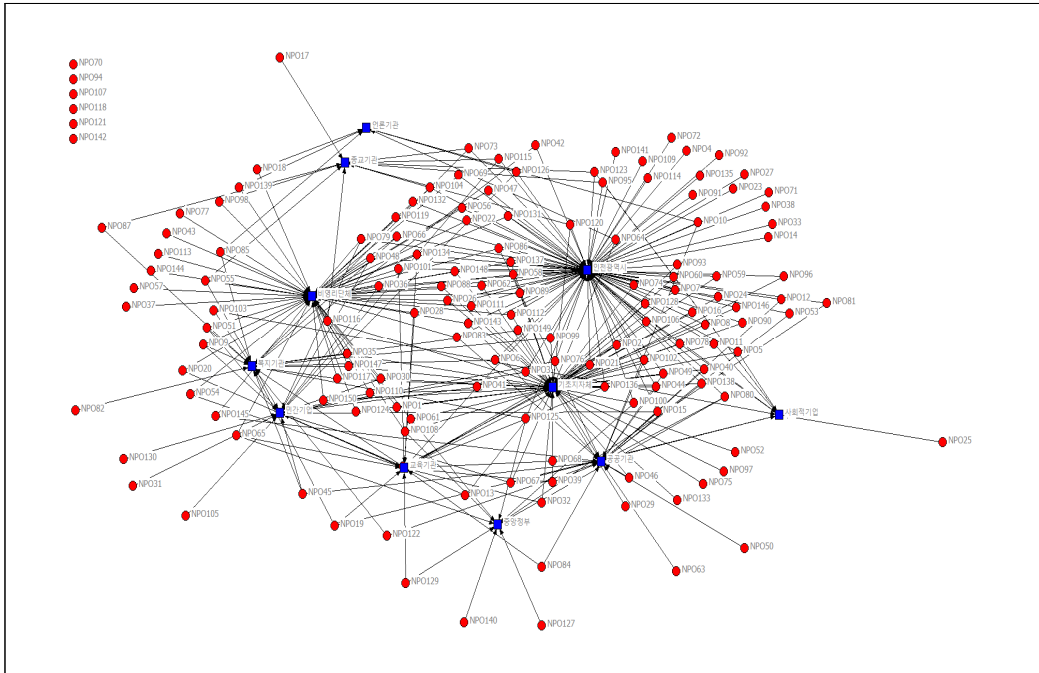
협력기관	전체	1순위
중앙정부	10 (2.9)	5 (3.4)
인천광역시	88 (25.6)	63 (42.3)
자치 군·구청	64 (18.6)	21 (14.1)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	26 (7.6)	6 (4.0)
민간기업	21 (6.1)	7 (4.7)
비영리민간단체	57 (16.6)	20 (13.4)
복지기관	20 (5.8)	7 (4.7)
종교기관	11 (3.2)	6 (4.0)
사회적기업·협동조합	10 (2.9)	3 (2.0)
교육·연구기관	17 (4.9)	6 (1.5)

협력기관	전체	1순위
언론사	6 (1.7)	1 (0.7)
없음	4 (1.2)	4 (2.6)
기타	10 (2.9)	-
계	344 (100.0)	149 (100.0)

주 : 복수응답 항목임.

- <그림 5>와 <표 32>의 인천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의 협력네트워크에 대한 분석결과임. 서로 다른 두 개의 집단(‘개별 비영리민간단체’와 ‘각 비영리민간단체가 협력하는 조직’)에서의 협력네트워크를 분석하기 위해 투-모드 네트워크(two-mode network)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음.¹⁰⁾
 - 인천광역시청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비영리민간단체들과 상대적으로 많은 협력관계(연결정도중심성(Degree)=0.580)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그 다음으로는 자치군·구청(연결정도=0.413)으로 조사되었음.
 - 위세중심성(Eigenvector=0.713)의 수치를 고려하면 설문에 참여한 비영리민간단체의 네트워크에서 인천광역시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자치군·구청(위세중심성=0.513)으로 나타났음.
 - 근접중심성(Closeness)으로 살펴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비영리민간단체의 네트워크에서 인천광역시청의 근접중심성(0.612)과 자치군·구청(근접중심성=0.518)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즉, 인천광역시청은 비영리민간단체가 다른 비영리민간단체와 최단 경로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인천광역시청이 매개중심성(Betweenness=0.457)의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아 인천광역시가 비영리민간단체를 연결해주는 매개자·중개자로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한편,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비영리민간단체 중 6개 단체는 어떤 조직과도 협력이나 연대 또는 소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10) 네트워크 분석의 방법 및 결과에 대한 해석은 강동준·박근식(2017), 곽기영(2014), 이인원(2013)의 연구를 참고하였음.



<그림 5> 인천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협력네트워크

<표 32> 인천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협력네트워크 중심성 분석결과

구분	연결정도중심성	위세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
중앙정부	0.067	0.047	0.378	0.031
인천광역시청	0.580	0.713	0.612	0.457
자치군·구청	0.413	0.513	0.518	0.238
공사·공단 등	0.153	0.147	0.411	0.059
민간기업	0.140	0.121	0.409	0.059
비영리민간단체	0.373	0.399	0.500	0.243
복지기관	0.133	0.110	0.413	0.050
종교기관	0.073	0.059	0.378	0.021
사회적기업·협동조합	0.067	0.060	0.381	0.018
교육·연구기관	0.113	0.099	0.401	0.032
언론사	0.040	0.032	0.371	0.003

❖ 비영리민간단체 간 협력 및 연대의 내용

- <표 33>에서도 나타나는 바와 같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천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간의 협력관계는 낮은 것(2.38~3.28점)으로 판단됨.¹¹⁾ 반면,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대한 인천광역시청의 지원의 필요성(3.35~4.32점)에 대한 점수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표 45> 참고).
- 설문조사의 결과는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인천시청의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에 대해서는 다소 낮게 나타남 (<표 47>의 3.01점).
-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방법-인천시청의 직접지원 또는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지원-에 대해 인천시청, 인천시의회, 비영리민간단체 간에 소통 또는 공론화과정이 필요해 보임.
-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주요쟁점을 다루기 위한 민관협력과 사회적기업·협동조합·비영리민간단체 간 소통·협력이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인천시청의 지원에 대한 필요성과 비영리민간단체와의 협력네트워크의 집중도가 높음. 따라서 인천시청과 비영리민간단체 간에 소통, 비영리민간단체 간의 정기적인 교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비영리민간단체 간의 협력 및 연대의 목적으로는 ‘소통 의사결정 위한 회의 참여’(3.28), ‘정보·자료 공유’(3.21), ‘공동사업 또는 프로젝트 수행’(3.02)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 33> 협력 및 연대의 목적

단위: 점

구분	공동사업 프로젝트 수행	집회·캠페인 ·서명 등 공동행동	의사소통· 결정 위한 회의 참여	공간 공유	정보·자료 공유	사무·IT용품 공유
평균	3.02	2.99	3.28	2.70	3.21	2.38

- 등록시기별로 비영리민간단체 간 협력 및 연대의 목적이 다소 차이가 있었음. 2006년 이후에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2011년 이후 3.22, 2006~2010년 3.16)가 2005년 이전에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비해 공동사업 및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 타 비영리민간단체와 협력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11) 김정욱·진성만(2017)의 연구 23쪽과 이용식(2011)의 연구 51쪽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인천시의 비영리민간단체 간의 소통 및 협력이 활발하지 않으며, 설문조사의 결과도 이전 연구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34> 비영리민간단체 간 협력 : 공동사업 및 프로젝트 수행

단위 : 개, ()안은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점)	
공동사업 · 프로젝트 수행	17 (11.3)	32 (21.3)	45 (30.0)	43 (28.7)	13 (8.7)	150 (100.0)	3.02	
등록 시기	2000 이전	4 (12.1)	10 (30.3)	11 (33.3)	8 (24.2)	-	33 (100.0)	2.70
	2001~2005	5 (17.9)	5 (17.9)	8 (28.6)	9 (32.1)	1 (3.6)	28 (100.0)	2.86
	2006~2010	4 (9.1)	8 (18.2)	14 (31.8)	13 (29.5)	5 (11.4)	44 (100.0)	3.16
	2011 이후	4 (8.9)	9 (20.0)	12 (26.7)	13 (28.9)	7 (15.6)	45 (100.0)	3.22

○ 2006~2010년에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3.23)와 2001~2005년에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3.04)가 2000년 이전 그리고 2011년 이후에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보다 집회 · 캠페인 · 서명 등 공동행동을 위해 협력 및 연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35> 비영리민간단체 간 협력 : 집회 · 캠페인 · 서명 등 공동행동

단위 : 단체, ()안은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점)	
집회 · 캠페인 · 서명 등 공동행동	22 (14.7)	27 (18.0)	45 (30.0)	42 (28.0)	14 (9.3)	150 (100.0)	2.99	
등록 시기	2000 이전	4 (12.1)	9 (27.3)	9 (27.3)	9 (27.3)	2 (6.1)	33 (100.0)	2.88
	2001~2005	6 (21.4)	2 (7.1)	7 (25.0)	11 (39.3)	2 (7.1)	28 (100.0)	3.04
	2006~2010	4 (9.1)	9 (20.5)	13 (29.5)	9 (20.5)	9 (20.5)	44 (100.0)	3.23
	2011 이후	8 (17.8)	7 (15.6)	16 (35.6)	13 (28.9)	1 (2.2)	45 (100.0)	2.82

○ 2006~2010년에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가 2005년 이전과 2011년 이후에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비해 소통 및 의사결정을 위해 협력 및 연대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표 36> 비영리민간단체 간 협력 : 소통 및 의사결정 등을 위한 회의 참여 단위 : 단체, ()안은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점)	
소통 및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 참여	12 (8.0)	18 (12.0)	54 (36.0)	48 (32.0)	18 (12.0)	150 (100.0)	3.28	
등록 시기	2000 이전	2 (6.1)	6 (18.2)	13 (39.4)	8 (24.2)	4 (12.1)	33 (100.0)	3.12
	2001~2005	4 (14.3)	-	12 (42.9)	10 (35.7)	2 (7.1)	28 (100.0)	3.21
	2006~2010	3 (6.8)	3 (6.8)	17 (38.6)	14 (31.8)	7 (15.9)	44 (100.0)	3.43
	2011 이후	3 (6.7)	9 (20.0)	12 (26.7)	16 (35.6)	5 (11.1)	45 (100.0)	3.24

- ‘공간 공유’를 위한 타 비영리민간단체와 협력 및 연대 수준은 평균 2.70으로 다른 목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음. 2000년 이전에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2.45)가 2001년 이후에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비해 공간을 공유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표 37> 비영리민간단체 간 협력 : 공간 공유 단위 : 단체, ()안은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점)	
공간 공유	28 (18.7)	42 (28.0)	37 (24.7)	33 (22.0)	10 (6.7)	150 (100.0)	2.70	
등록 시기	2000 이전	7 (21.2)	13 (39.4)	5 (15.2)	7 (21.1)	1 (3.0)	33 (100.0)	2.45
	2001~2005	6 (21.4)	4 (14.3)	9 (32.1)	8 (28.6)	1 (3.6)	28 (100.0)	2.79
	2006~2010	8 (18.2)	11 (25.0)	11 (25.0)	10 (22.7)	4 (9.1)	44 (100.0)	2.80
	2011 이후	7 (15.6)	14 (31.1)	12 (26.7)	8 (17.8)	4 (8.9)	45 (100.0)	2.73

- ‘정보 및 자료 공유’를 위한 타 비영리민간단체와 협력 및 연대 수준은 평균 3.21로, 2006~2010년에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가 2005년 이전과 2011년 이후에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비해 ‘정보 및 자료 공유를 위해 협력 및 연대하고 있다’(3.34)고 생각하고 있음.

<표 38> 비영리민간단체 간 협력 : 정보 및 자료 공유

단위 : 단체, ()안은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점)	
정보·자료 공유	8 (5.3)	25 (16.7)	57 (38.0)	48 (32.0)	12 (8.0)	150 (100.0)	3.21	
등록 시기	2000 이전	2 (6.1)	5 (15.2)	13 (39.4)	11 (33.3)	2 (6.1)	33 (100.0)	3.12
	2001~2005	3 (10.7)	5 (17.9)	8 (28.6)	10 (35.7)	2 (7.1)	28 (100.0)	3.11
	2006~2010	1 (2.3)	6 (13.6)	16 (36.4)	17 (38.6)	4 (9.1)	44 (100.0)	3.34
	2011 이후	2 (4.4)	9 (20.0)	20 (44.4)	10 (22.0)	4 (8.9)	45 (100.0)	3.11

- ‘사무 및 IT 용품’을 공유하기 위해 타 비영리민간단체와 협력 및 연대한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으며(2.38), 2000년 이전에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의 동의 여부(2.15)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39> 비영리민간단체 간 협력 : 사무 및 IT 용품 공유

단위 : 단체, ()안은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균 (점)	
사무·IT용품 공유	33 (22.0)	62 (41.3)	27 (14.0)	21 (14.0)	7 (4.7)	150 (100.0)	2.38	
등록 시기	2000 이전	7 (21.2)	18 (54.5)	5 (15.2)	2 (6.1)	1 (3.0)	33 (100.0)	2.15
	2001~2005	6 (21.4)	11 (39.3)	5 (17.9)	5 (17.9)	1 (3.6)	28 (100.0)	2.43
	2006~2010	10 (22.7)	16 (36.4)	9 (20.5)	7 (15.9)	3 (6.7)	44 (100.0)	2.43
	2011 이후	10 (22.2)	17 (37.8)	8 (17.8)	7 (15.6)	3 (6.7)	45 (100.0)	2.47

❖ 중앙정부, 인천시청 또는 자치군·구청과의 협력방식

- 설문에 참여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중앙정부, 인천시청 또는 기초단체와의 협력방식으로는 ‘정부 보조금’(37.9%)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사업·프로젝트 공동진행’(17.7%), ‘정보·자료이용’(13.3%) 순으로 나타났음.

- 협력방식에 대한 1순위 응답을 보면, 절반 이상이 '정부 보조금'(59.3%)으로 응답하였음. 즉, 비영리민간단체와 공공기관 간의 협력방식은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통한 보조금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표 40〉 중앙정부, 인천시청 또는 자치군·구청과의 협력방식 단위: 단체, ()안은 %

구분	정부 보조금	사업 · 프로젝트 공동진행	법률 · 행정적 지원	공청회 · 설명회 · 자문회의 참여	정책 수립을 위한 공동 워크샵 개최	공공 기관이 제공하는 공간 활용	정보 · 자료 이용	사무 · IT용품 활용	기타	계
협력방식 (전체)	92 (37.9)	43 (17.7)	7 (2.9)	23 (9.5)	16 (6.6)	12 (4.9)	33 (13.6)	5 (2.1)	12 (4.9)	243 (100.0)
1순위	89 (59.3)	19 (12.7)	2 (1.3)	8 (5.3)	4 (2.7)	5 (3.3)	14 (9.3)	-	9 (6.0)	150 (100.0)

주 : 복수응답 항목임.

❖ 민관협력을 위한 소통의 정도

- 지난 한 해 동안 인천시청 또는 자치구청과의 협력을 위해 비영리민간단체와 공무원 간의 소통의 정도는 '분기별 1회'(34.9%)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6개월에 1회'(33.6%), '1달에 1회'(21.5%) 순으로 나타났음.
- 비영리민간단체 간에 소통이 적은 것뿐만 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와 인천시청 및 자치구청 간의 소통의 빈도도 적은 것으로 보임.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협력이 강조되는 만큼 정기적이거나 좀더 잦은 소통이 필요해 보임.

〈표 41〉 비영리민간단체와 공공기관 간 소통의 정도 단위: 단체, ()안은 %

구분	일주일에 1회 이상	2주일에 1회	1달에 1회	분기별 1회	6개월에 1회	계
소통빈도	6 (4.0)	9 (6.0)	32 (21.5)	52 (34.9)	50 (33.6)	149 (100.0)

4) 인천광역시 공익활동 지원정책

❖ 인천광역시의 보조금 지원사업 참여

- 인천광역시의 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에 대해서는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단체(70.7%)가 참여한 적이 없는 단체(29.3%)보다 두 배 이상 많았음.

- 등록시기별로는 2000년 이전에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의 84.8%가 인천시 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11년 이후에 설립된 단체의 42.2%가 참여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음.
- 2011년 이후에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는 ‘타 비영리민간단체와 공동 프로젝트 및 사업을 진행한다’(〈표 34〉 참고)고 응답한 결과값이 높은 것과 대조적임.

〈표 42〉 보조금 지원 사업 진행 여부

단위: 단체, ()안은 %

구분		예	아니오	계
전체		106 (70.7)	44 (29.3)	150 (100.0)
등록 시기	2000 이전	28 (84.8)	5 (15.2)	33 (100.0)
	2001~2005	20 (71.4)	8 (28.6)	28 (100.0)
	2006~2010	32 (72.7)	12 (27.3)	44 (100.0)
	2011 이후	26 (57.8)	19 (42.2)	45 (100.0)

주 : Chi-square=6.906, p-value=.075

❖ 인천광역시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 공익활동을 위한 인천광역시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평점 2.59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 등록시기별로는 ‘2000년 이전’에서 상대적으로 만족 정도(2.90)가 높게 나왔으나 등록시기가 최근에 가까울수록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2001~2005년 2.60점, 2006~2010년 2.48점, 2011년 2.44점). 인천광역시는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보조금만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날 개연성이 있음.
 - 인천광역시와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타 특별시·광역시는 공익사업을 위한 보조금 지원 외에도 공익활동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공간제공, 교육프로그램 제공, 네트워크 및 협력지원, 연구 및 정보제공 등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음.

<표 4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정책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단체, ()안은 %

구분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계	평균 (점)	
전체	28 (18.7)	39 (26.0)	54 (36.0)	25 (16.7)	4 (2.7)	150 (100.0)	2.59	
등록 시기	2000 이전	3 (9.1)	6 (18.2)	16 (48.5)	7 (21.2)	1 (3.0)	33 (100.0)	2.90
	2001~2005	5 (17.9)	8 (28.6)	9 (32.1)	5 (17.9)	1 (3.6)	28 (100.0)	2.60
	2006~2010	9 (20.5)	13 (29.5)	15 (34.1)	6 (13.6)	1 (2.3)	44 (100.0)	2.48
	2011 이후	11 (24.4)	12 (26.7)	14 (31.1)	7 (15.6)	1 (2.2)	45 (100.0)	2.44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

-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개선해야 할 점으로 ‘공익활동 지원사업 예산증액’(30.1%)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음. 운영비 등으로의 재정지원 항목확대(22.1%), 행정·회계절차 간소화(18.0%) 등으로 조사되었음.
- 1순위 응답만을 고려하였을 때, 설문조사에 참여한 비영리민간단체의 49.3%가 ‘공익활동 지원사업 예산증액’으로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은 ‘재정지원 항목확대’(17.3%)임.
- 재정지원에 대한 부분이 개선해야 할 점으로 나타난 이유로 비영리실패이론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자원의 불충분성에서 기인하는 문제이기도 함. 그러나 현재 인천광역시가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공모사업을 통한 보조금지원 및 사업비지원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보임.

<표 4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을 위해 개선해야 할 점

단위 : 단체, ()안은 %

구분	공익활동 지원사업 예산증액	재정지원 항목확대 : 운영비 지원	공간지원 : 임대료지원 · 회의실공유	창립요건 및 등록절차 간소화	행정절차 · 회계절차 간소화	중간지원 조직설치 · 지원확대	비영리단체 교류·협력 지원	기타	계
전체	87 (30.1)	64 (22.1)	37 (12.8)	14 (4.8)	52 (18.0)	18 (6.2)	14 (4.8)	3 (1.0)	289 (100.0)
1순위	74 (49.3)	26 (17.3)	17 (11.3)	9 (6.0)	13 (8.7)	3 (2.0)	6 (4.0)	2 (1.3)	150 (100.0)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분야

-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천광역시의 지원분야에 대해서는 ‘재정지원’(4.43)이 가장 높은 평균점수를 보였으며, ‘공간지원 : 임대료 지원 · 공공기관 소유 건물의 장기임대’(3.95)’, ‘청년들의 참여·활동 지원’(3.75) 등에 대한 점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그 외에도 ‘행정·사무용품 지원’(3.73), ‘단체 간 교류·협력 지원’(3.69), ‘정보·통신비용 지원’(3.69), ‘공간대관 : 회의실 사용’(3.67) 등도 필요한 지원분야로 조사되었음.

<표 45>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분야

단위 : 단체, ()안은 %

구분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평균 (점)
재정지원	-	1 (0.7)	17 (11.3)	65 (46.4)	67 (44.7)	4.32
공간대관 : 회의실 사용	-	15 (10.0)	49 (32.7)	57 (38.0)	29 (19.3)	3.67
공간지원 : 임대료 지원 또는 공공기관 소유 건물의 장기임대	1 (0.7)	12 (8.0)	31 (20.7)	55 (36.7)	51 (34.0)	3.95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훈련의 제공	3 (2.0)	9 (6.0)	48 (32.0)	75 (50.0)	15 (10.0)	3.60
단체의 설립·운영, 자원봉사 모집 등 상담	4 (2.7)	14 (9.3)	73 (48.7)	44 (29.3)	15 (10.0)	3.35
공익활동의 확산을 위한 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2 (1.3)	15 (10.0)	48 (32.0)	70 (46.7)	15 (10.0)	3.55
정보제공 및 연구지원	2 (1.3)	12 (8.0)	55 (36.7)	64 (42.7)	17 (11.3)	3.55
청년들의 참여·활동 지원	1 (0.7)	7 (4.7)	44 (29.3)	69 (46.0)	29 (19.3)	3.79
단체 간 교류·협력 지원	2 (1.3)	7 (4.7)	49 (32.7)	70 (46.7)	22 (14.7)	3.69
정보·통신비용 지원	1 (0.7)	10 (6.7)	45 (30.0)	72 (48.0)	22 (14.7)	3.69
행정·사무용품 지원	1 (0.7)	10 (6.7)	46 (30.7)	65 (43.3)	28 (18.7)	3.73

주 : 설문응답자 수는 150단체임.

공익활동 실무교육 분야

- 비영리민간단체 활동가의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분야에 대해서는 ‘사업기획’(22.1)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음. ‘회계’(16.9%), ‘모금’(15.3%), ‘홍보’(13.4%), ‘법률’(11.5%), IT(11.1%) 순으로 조사되었음.

〈표 46〉 비영리단체 활동가의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훈련분야

단위: 단체, ()안은 %

구분	법률	회계	IT	홍보	모금	사업기획	글쓰기	리더십	계
교육 분야	30 (11.5)	44 (16.9)	29 (11.1)	35 (13.4)	40 (15.3)	55 (21.1)	9 (3.4)	19 (7.3)	263 (100.0)

주: 복수응답 항목임.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필요 여부에 대한 의견으로는 평균점수 3.01로 나타났음.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각각 32.7%, 8.0%)라고 생각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각각 19.3%, 15.3%)라고 응답한 비영리민간단체보다 조금 많았음.
- 인천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는 인천광역시청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필요로 하지만,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에 대해서는 합의되지 않은 상태로 보임.
-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는 시청과 시의회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 등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과정을 통해 지원방식과 지원조직에 대해서 논의과정을 가졌음(김정욱·진성만, 2017).
- 인천시에서도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 수행을 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만큼 지원내용과 방식 그리고 조직의 운영 등에 대해서 공론화과정을 갖는 것이 필요해 보임.

〈표 47〉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필요 여부

단위: 단체, ()안은 %

구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계	평점
지원조직 필요	12 (8.0)	49 (32.7)	37 (24.7)	29 (19.3)	23 (15.3)	150 (100.0)	3.01

3. 소결 및 시사점

1)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 및 기능

- 설문조사에 참여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주요 활동 분야로는 문화·예술·체육(52개, 13.9%)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49개, 13.1%), 봉사활동(48개, 12.8%), 아동·청소년·청년(39개, 10.4%) 순으로 조사되었음. 그 외에도 22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비영리민간단체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활동분야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정부나 민간기업이 해결하지 못하는 지역의 문제나 수요 등을 비영리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Furmkin의 비영리조직의 기능의 관점으로 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비영리민간단체는 지역사회의 수요에 서비스나 물품을 제공하는 수요-도구적인 기능에 가장 충실한 것으로 나타났음(53.1%). 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전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대변자로서의 기능(Advocacy; 수요-표현)은 전체 활동의 20.5%로 나타났음.
- 공급-도구(13.2%) 또는 공급-표현(12.4%)적인 기능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은 수요-도구 및 수요-표현의 기능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동의 비율은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비영리민간단체의 공급-도구나 공급-표현의 기능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과 기능이 상대적으로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인 것일 수도 있음. 한편, 비영리민간단체의 제도화에 비해 사회혁신이나 사회적기업가 양성 등의 공급-도구에 대한 제도화의 시기가 비교적 최근이기 때문일 수도 있음.
-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에 사회적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음. 대책으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사회문제나 수요 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회혁신이 강조하고 있고, 사회혁신을 담당하는 사회적기업이나 소셜벤처(Social Venture)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음. 사회혁신이나 사회적가치 등을 실현하기 위한 기금의 조성방법, 자산화 방안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2) 비영리민간단체의 운영 및 조직특성

- 설문조사에 참여한 비영리민간단체는 비영리실패이론의 불충분성에 근거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표 30〉 3.46~4.18). 즉, 단체의 인사 및 재정 운용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근직원이 1~2명이거나 상근직원이 ‘없다’고 응답한 비영리민간단체가 61% 이상(각각 47.3%와 14.3%)인 것으로 조사되었음(〈표 13〉 참고). 인적자원의 부족에 대한 어려움은 〈표 30〉에서도 확인됨. 공익활동 수행 시 직원의 부족이라고 응답한 비영리민간단체가 68.7%에 달함.
- 또한, 응답단체의 85.3%가 공익활동을 수행하기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4.18점, 〈표 30〉 참고), 2017년 한 해 동안 단체의 운영비와 인건비가 1,000만원 이하인 곳이 절반 이상(각각 56.5%, 51.9%)이며, 500만원 이하인 곳이 각각 39.7%, 45.0%에

달함. 단체를 운영하거나 공익활동을 수행하기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갖고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지역사회에 영향력이 높거나 사회적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활동일 경우에 운영비나 인건비, 공간지원 등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임.
- 젊은 세대의 유입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표 14>을 보면, 설문조사에 참여한 비영리민간단체의 83.0%가 20대 회원의 비율이 10% 미만이라고 응답하였고, 69.4%가 30대 회원의 비율이 10% 미만이라고 응답하였음. <표 45>에서도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도 청년의 참여유도 및 활동지원에 대한 항목에서도 3.79점으로 높았으며, 65.3%가 청년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대구광역시의 경우 공익활동지원센터와 청년센터가 공간을 공유함으로써 청년들이 공익활동에 참여·유입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으로 보이며, 부산광역시의 경우 청년인턴제를 활용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있음(김정욱·진성만, 2017). 대전광역시는 ‘마을청년네트워크’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공익활동 참여를 유도·지원하고 있음(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홈페이지).¹²⁾
- 인천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음(<표17>). 2000년 이전에는 전국단위의 지부조직(60.6%)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001년 이후로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인천지역 독립조직의 형태로 인천광역시에 등록하는 비율이 2001~2005년에 53.6%, 2006~2010년에 68.2%, 2011년 이후에는 62.2%로 상당히 높아지고 있음.
- 인천지역 독립조직의 설립·등록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인천지역의 주요 쟁점을 발굴하거나 지역사회가 갖는 문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단체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지역사회가 갖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비영리민간단체 간의 공동사업이나 프로젝트 등으로 수행할 수 있음. 또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공기관이나 시장의 영역에서 대응하지 못하는 수요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나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천지역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육성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12)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지원센터 홈페이지, 마을 청년 네트워크 1차모임, 2018년 6월 1일 검색 (<https://socialcapital.kr>).

3) 비영리민간단체의 협력과 네트워크

- 인천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는 정부기관과 주로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네트워크 분석 결과(〈그림 5〉와 〈표 32〉 참고)를 보면 인천광역시청은 비영리민간단체와의 네트워크에서 영향력, 타 단체와의 근접성, 비영리민간단체 간 매개·중개 등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인천광역시청과 협력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영리민간단체는 25.6%임(〈표 31〉 참고; 비영리민간단체·복지기관·종교기관·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비영리조직과의 협력은 전체의 28.5%). 인천광역시를 1순위 협력기관으로 응답한 단체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비영리민간단체의 42.3%(비영리조직을 1순위로 응답한 단체는 전체의 24.2%)로 비영리민간단체의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협력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인천광역시청을 비롯한 공공기관과의 협력의 내용은 설문조사에 참여한 비영리민간단체의 59.3%가 1순위로 정부보조금이라고 응답하였음(〈표 40〉 참고). 반면, 공동사업 및 프로젝트 진행(1순위 응답: 12.7%), 정책수립을 위한 공동 워크숍 개최(1순위 응답: 2.7%) 등은 다소 낮게 나타났음.
 - 인천광역시청은 인천지역 비영리민간단체의 네트워크에서 중요한 협력자로서 조사되었으나 협력의 내용이 정부보조금 중심으로 조사되었음. 즉, 인천광역시청과 비영리민간단체 간의 협력의 내용은 지역사회의 주요쟁점을 논의·발굴하거나 문제해결을 위해 프로젝트나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보다는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한정되는 것으로 판단됨.
- 인천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는 지역주민 그리고 타 비영리민간단체와 소통이나 교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임.
 -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이나 의제설정 등을 위해 지역주민들과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영리민간단체는 27.3%에 그쳤으며(〈표 21〉 참고), 소통하고 있다고 응답한 단체 중에서도 18개 단체만이 1달에 1회 이상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협력 및 연대에 대한 조사에서도 2.38~3.28점으로 인천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간 소통과 교류가 많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표 33〉 참고). 네트워크 분석에서도 비영리민간단체 간 협력보다 인천광역시와 협력하는 형태로 나타났으며, 협력을 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응답에서도 비영리민간단체가 16.6%로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반면,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인천광역시청의 지원으로 비영리민간단체 간 ‘교류와 협력’의 필요성(3.69점, 〈표 45〉 참고)도 높게 나타났음.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설치·운영(〈표 47〉)에 대한 필요성의 점수(3.01점)이 높지 않게 나온 것도 비영리민간단체 간 소통과 교류가 활발하지 않은 것에서 기인한 것일 수도 있음(김정욱·진성만, 2017).

- 그러나 2006~2010년, 2011년 이후에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는 2005년 이전에 설립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비해 타 비영리민간단체와 협력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공동사업 및 프로젝트의 수행’(각각 3.16점, 3.22점; 평균 3.02점), ‘소통 및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 참여’(각각 3.43점, 3.24점; 평균 3.28점) 등의 이유로 다른 비영리민간단체와 협력을 하고 있다고 조사되었음.

○ 지역사회의 문제는 다양·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이 모든 문제나 쟁점을 다룰 수는 없음. 즉, 지역사회의 주요쟁점을 다루고, 문제와 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해 비영리민간단체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음.

- 따라서 공모사업을 위한 보조금에 대한 협력형태를 넘어서 공청회나 자문회의 등을 통한 협력, 공동프로젝트의 진행, 의사결정과정에 참여 등 인천광역시청과 비영리민간단체 간 협력의 내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도시재생과 마을공동체 등에서 비영리민간단체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특히, 문화·복지·통일·환경 등의 분야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만큼 비영리민간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해 보임.

4) 공익활동 지원정책

○ 인천광역시청은 공익활동 수행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공모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2013년부터 총 8.0~16.2억원을 100~167개의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고 있음. 공모사업을 통한 보조금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에 대한 만족도(2.59점)는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울산광역시를 제외한 특·광역시에는 공익활동을 위해 상담, 교육, 공간지원, 네트워킹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 반면, 인천광역시는 보조금 지원에 한정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음.

- 설문조사의 결과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인천광역시의 공익활동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재정지원(4.32점), 공간지원(3.95점), 행정·사무용품 지원(3.73), 통신비 지원(3.69) 청년 참여 지원(3.79점), 단체 간 교류(3.69) 등 많은 분야에서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사업비에 한정하여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는 현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항으로 공익활동을 위한 재정지원의 확대(30.1%), 재정지원의 항목(운영비 등)확대(22.1%), 행정 및 회계 절차의 간소화(18.0%) 등에 대한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표 44〉 참고).

- 인천광역시청은 공모사업의 형태로 보조금 지원에 한정하여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있음. 보조금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의 제공, 협력과 소통 증진을 위한 교류 확대 및 지원, 협업을 위한 공간활용 및 지원, 정보제공 및 연구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현재 지원제도 하에서 요구되는 회계(16.9%)교육 외에도 사업기획(21.1%), 홍보(13.4%), 법률(11.5%), IT(11.1%), 리더십(7.3%)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훈련과정이 필요해 보임.
- 인천광역시청은 공모사업을 통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대한 보조금 지원 외에도 비영리민간단체관련 자료를 구축하고 관리하고 있음.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해 정확한 정보 및 자료의 관리·구축이 필요해 보임.
 - 설문조사를 수행할 때, 인천광역시가 관리하고 있는 자료는 일부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설문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중 총 507개에 연락을 취하였으나 폐업 6개, 법인 변경 30개, 결번 123개 등 인천광역시에서 관리·제공하고 있는 정보가 정확하지 않았음.
 - 비영리민간단체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구축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름. 비영리민간단체의 운영상 어려움 때문에 폐업되거나 말소되기도 하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제도에 따라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으로 법인의 형태를 변경하기 때문임.
 - 정확한 자료의 구축 및 적절한 지원을 위해 지원부서가 설치되거나 관련 인력 또한 보충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현재 인천광역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위한 중간지원조직도 없고, 관련 업무를 행정자치과에 소속된 공무원 1명이 담당하고 있음.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적절하게 지원하고, 지원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관리·구축되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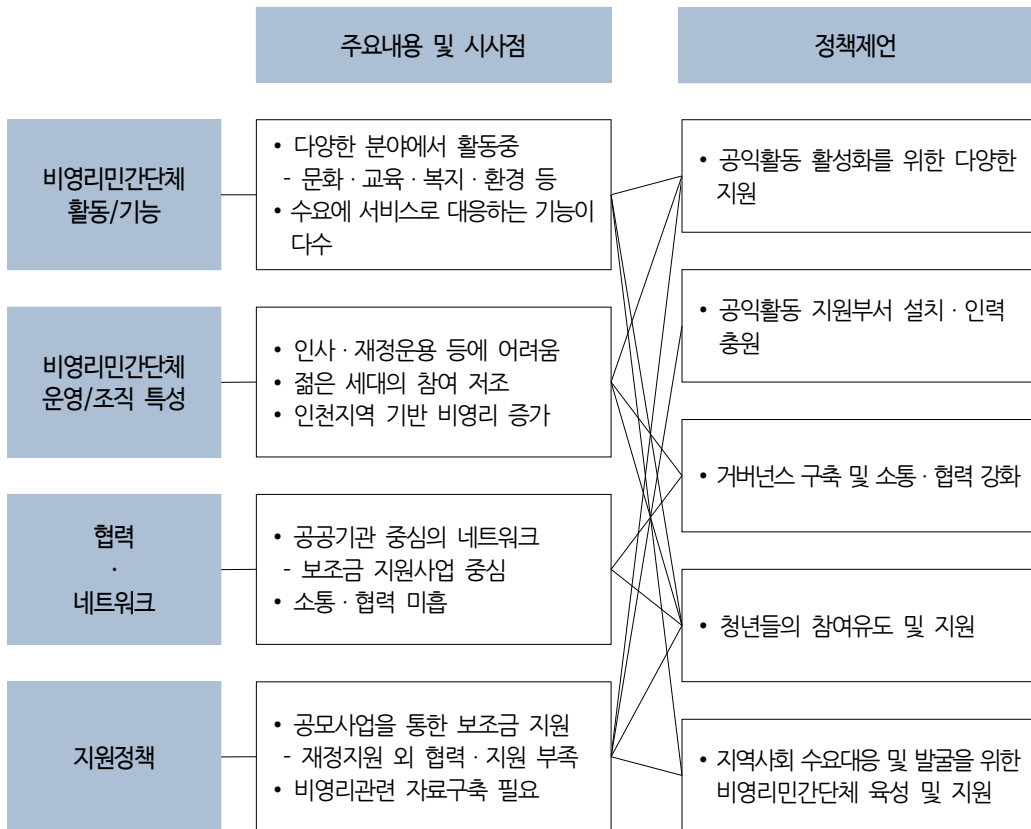
IV

인천광역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언

IV. 인천광역시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언

1.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 인천광역시 공익활동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분석을 중심으로 현행 공익활동 지원과 관련된 제도 및 조직의 검토, 현황분석 등을 통해 공익활동관련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분석결과를 기초로 하여 <그림 6>과 같이 인천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향을 제시함.



<그림 6>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공익활동 지원방향

1)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 먼저, 인천광역시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 및 활성화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사업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인천시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공모사업을 통한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음. 서울시·부산시·대구시·광주시·대전시 등의 특·광역시처럼 교육훈련과정 운영, 상담 및 컨설팅 제공, 네트워크 구축 및 확산, 연구지원 및 정보제공, 공간의 제공 등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비영리민간단체는 정부나 민간기업이 해결하지 못하는 지역사회의 문제나 대응하지 못하는 수요를 해결·대응하고 있음. 그러나 재정이나 인력 등 자원의 부족이나 전문성이 부족하여 공공기관의 지원이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음.
 -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제해결과 주요사안을 다루기 위해 민관협력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비영리민간단체의 전문성 제고, 협력에 대한 역량을 개발을 위해 공익활동을 수행할 때 필요로 하는 것들(예를 들어,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지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청년의 참여지원 등)을 파악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재정지원으로 한정되더라도 적용되는 항목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현재 인천시가 제공하고 있는 보조금 지원은 금액이 적을 뿐만 아니라 사업비로만 한정되기 때문에 지원의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음.
 - 비영리민간단체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아 공익활동의 활성화 및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을 증액하거나 운영비·인건비·공간지원(임대료 또는 공공기관의 공간 활용) 등으로 지원항목의 변경·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공익활동 지원부서 설치 및 인력충원

- 공익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조직을 구축하고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음. 공익활동 지원부서를 인천시청 내에 설치하고, 직원들을 충원하거나 중간지원조직을 설치·운영하는 등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인력충원이 필요함.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이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시민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을 별정직으로 임용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설문조사의 결과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공익활동 수행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표 44> 참고). 그러나 현재 인천시의 공익활동 지원

분야와 규모는 보조금 지원에 한정하고 있으며, 자치행정과의 주무관 1명이 공익사업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형태임.

-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고 실질적인 민관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고, 공익활동 지원분야를 다양화하고 그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조직과 인력차원에서 담당부서를 설치하여 담당직원을 충원하거나 중간지원조직을 설치하는 등 공익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운영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공익활동 지원을 확대하는 것에는 동의하는 반면, 중간지원조직의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논의·합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익활동의 활성화 및 방법 등에 대해 공익활동관련 주요 행위자들로 구성하여 공론화과정을 가질 필요가 있음.

3) 거버넌스 구축 및 소통·협력의 강화

- 인천시청과 비영리민간단체, 인천지역의 비영리민간단체 간, 인천시민과 비영리민간단체 간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인천지역의 소통·교류·협력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
 - 교육·보건·안전·복지·문화·환경 등 최근의 문제들은 복잡하고 다양한 조직들의 참여를 통한 협력적인 대응을 필요로 함(Jang, Valero, Kim, & Cramb, 2015; Kim & Jung, 2016). 지역사회의 문제해결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의제를 발굴하는 데에도 정부·시민·비영리민간단체 간의 소통과 교류가 강조되고 있음(채은경·정남숙, 2017). 인천지역에서도 문화, 복지, 환경,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비영리민간단체가 활동하고 있는 만큼 각 분야의 의제발굴과 설정, 그리고 현안 해결 등을 위해 비영리민간단체와 협력할 여지가 있음.
- 설문조사 결과는 인천광역시청이 비영리민간단체들이 협력·교류하는 가장 중요한 조직으로 조사되었음. 그러나 인천시청과 비영리민간단체의 주된 협력방식은 보조금 지원사업과 관련된 것임. 지역사회의 의제를 발굴·설정하거나 의사결정에 참여 또는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사업 또는 프로젝트의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형태의 소통과 협력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음.
- 현재는 보조금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협력의 주된 이유이지만, 인천광역시청이 비영리민간단체 간의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비영리민간단체와 협력하고 있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간에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인천시청은 인천시민, 비영리민간단체, 공공기관이 소통과 교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매개·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공공기관이 매개·지원의 역할을 넘어서 관리·통제하게 되면 비영리민간단체가 활력을 잃거나 본래의 목적(Mission·Vision)에 집중하지 못하는 목적 전치(Mission Drift)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이 자발성과 자율성에 근거하는 만큼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인천시청의 매개·지원하는 역할은 하향식이거나 위계적·권위적이어서는 안됨. 공공기관과 비영리민간단체 간의 협력·교류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매개·지원해야 할 것임.
- 인천광역시청은 인천지역을 대표하는 다양한 비영리민간단체들과 정기적인 소통·교류하는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하여 인천지역의 주요 의제를 발굴·설정할 필요가 있음. 소통 및 토론을 통해 발견된 지역의 현안을 협력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관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임.
- 비영리민간단체는 타 비영리민간단체 그리고 지역주민들과의 소통 및 교류를 할 필요가 있음. 사회적자본이론에 따르면, 비영리민간단체 간 잦은 교류와 소통,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역주민의 참여 등은 지역사회의 신뢰를 구축하고, 호혜성의 규범을 형성하며, 정보 및 지식의 교류 등을 촉진함으로써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Putnam, 2000).
- 또한, 비영리민간단체 간 소통과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의 의제를 설정하고 발견된 문제에 공동대응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설문조사의 결과에서는 인천지역의 비영리민간단체 간에 교류와 협력이 활발하지 않고(<표 32> 참고), 지역주민들과의 소통과 교류도 활발하지 않은 것(<표 20>)으로 나타났음.
- 지역사회의 문제가 복잡화되고 있는 만큼 여러 기관의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음. 예를 들어, 지역사회의 교육 또는 청소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영리조직, 종교기관, 학교 그리고 공공기관이 협력하거나(Jang et al. 2015), 재난관리를 위해 지역사회의 비영리조직이 지방정부와 협력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과성을 증진시킨다는 연구(Kim & Jung, 2016)도 있음. 즉, 비영리민간단체 간 소통과 교류를 통해 지역의 현안을 발견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잦은 소통과 교류를 통해 협력의 역량 또한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음.
- 시민의 참여와 시민과의 소통·교류 없는 공익활동은 시민들의 삶과는 동떨어진, 관계 없는 공익활동에 그칠 수 있음. 또한, 소통과 교류가 없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지역사회 또는 지역주민과의 근접성과 친밀감 등 비영리민간단체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이자 강점을 갖지 못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의제설정과 문제해결을 위한 영향력을 상실할 수도 있음.

4) 청년들의 참여 유도

- 청년들의 비영리민간단체에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타 지역에서는 공익활동지원 센터와 청년센터를 같은 공간을 공유함으로써 상승효과(Synerge)를 만들거나 공모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참여를 유도하고 있음. 즉, 인천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익활동이나 사회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크 형성, 공간의 제공, 상담 및 컨설팅 제공, 공모사업의 추진 등을 할 수 있을 것임.
- 설문조사 결과 현재 인천지역의 비영리민간단체는 청년들의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3〉 참고). 청년들이 참여하지 않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은 지역사회에서 논의되어야 할 청년들의 주요 현안이나 문제들을 배제될 수 있으며, 새로운 사고·지식·기술 등이 유입되지 않은 채 지역사회의 활력과 역동성이 저하될 수 있음.
- 청년들의 공익활동 참여는 인천지역의 공익활동을 활성화하고, 사회적자본을 형성하며 새로운 세대의 유입으로 인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임. 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지역사회의 참여로 인해 청년관련 정책의 수립, 지역사회현안발굴 및 의제설정,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및 수요대응 등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임.

5) 지역사회의 수요 대응 및 발굴을 위한 공익활동 지원

- 지역문제 해결, 지역사회 현안 및 수요 발굴 및 대응하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육성하고,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비영리민간단체가 지역사회에 서비스와 물품을 제공함으로써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비영리민간단체에 행·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현안과 수요를 발굴하여 대응하는 역할을 하는, 즉 공급-도구의 영역에 속하는 역할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발굴·육성·지원할 필요가 있음.
- 육아·교육·공동체·돌봄·복지·도시재생·다문화·통일 등 지역사회의 문제는 복잡해지고 있음. 복잡해진 문제와 수요에 대해 정부나 기업이 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사회혁신, 소셜벤처, 사회적기업 등 제3섹터와의 협업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Weber & Khademian, 2008; 박민진, 2018). 돌봄·공동체·문화·복지·통일·환경 등의 분야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전문지식, 정보, 접근성, 신뢰 등에서 장점을 갖고 있음. 그러나 비영리민간단체는 재정·인력·공간 등의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문제해결과 수요대응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육성·지원이 필요함.

-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지역의 비영리민간단체는 지역사회의 수요에 음악회·전시회·강연회 등을 개최하는 역할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표 11〉 참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나 물품을 제공하는 역할은 9.8%에 그치고 있으며, 지역의 수요를 발굴하여 대응하는 공급-도구(13.2%) 또는 공급-표현(12.4%) 측면의 역할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지역사회의 문제와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소셜벤처·비영리민간단체에 지속적으로 재정지원할 수 있는 공동의 기금마련이 필수적임. 인천지역에는 공급-표현에 속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이 미약한 만큼 지역사회에서 발굴된 수요에 적절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기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구체적으로 지역재단(Community Foundation), 사회성과보상사업(Social Impact Bonds), 시민자산화, 크라우드 펀딩 등 다양한 기금 또는 재정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의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기초조사로서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150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활동의 내용, 조직의 운영, 거버넌스 및 네트워크, 공익활동 지원정책, 조직의 일반현황 등을 다루었음. 인천지역의 비영리민간단체와 공익활동에 대해서 정량화된 자료를 구축하고 공익활동 전반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여 인천광역시의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한 것에서 의의가 있음.
- 향후 진행될 연구를 통해서는 인천시와 비영리민간단체 간 협력에 미치는 요인이나 발전방안, 협력네트워크의 변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방안, 지역사회 수요대응 및 문제해결을 위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역할 등이 다루어 질 수 있을 것임.
-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음.
 -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연구의 결과는 인천지역의 공익활동 전반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인천지역에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은 비영리민간단체를 비롯하여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권리능력 없는 사단, 일반 개인 등 다양함. 또한,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공무원, 일반시민, 서비스수혜자 등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음.
 - 조사의 결과는 현재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현황 및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음. 1)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전수를 조사하는

대신 150개의 표본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기 때문임. 설문조사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등록년도를 기준으로 층화추출하였으나 결번·말소 등의 이유로 일부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다른 비영리민간단체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조사의 결과는 오차가 있을 수 있음. 2) 세입이나 지출, 회원, 상근직원, 자원봉사자 등 조직의 운영과 관련된 항목은 공식문서를 바탕으로 조사된 것이 아니라 설문을 통해 조사된 것이기 때문에 오차가 있을 수 있음.

- 기초조사를 위해 설계한 설문문항은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의 개최 및 의견수렴을 위한 소통의 빈도, 활동의 내용, 협력의 유형 등으로 구성되었음. 그러나 회의의 내용이나 참여정도, 의견수렴과정에서의 소통의 내용과 의미, 서비스나 행사의 질과 만족도, 협력의 질적인 측면 등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한 점에서 한계가 있음.

주제어 ▶ 인천광역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참고문헌

- 강동준·박근식(2017), “세계 RTA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한국 FTA 전략에 관한 연구”, 『통상정보연구』, 제19권 제3호, pp. 3~23.
- 고경훈·안영훈 (201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체계 및 제도개선』, 한구지방행정연구원.
- 곽기영 (2014), 『소셜네트워크분석』, 청담.
- 김정욱·진성만 (2017), 『인천시 공익활동 지원방안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 김준기 (2006), 『정부와 NGO』, 박영사.
- 박민진 (2018), 『구조화이론의 관점에서 본 한국의 사회혁신 추동요인 연구 : 소셜벤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영선 (201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을 중심으로 살펴 본 시민사회활성화 정책 방안 연구”, 『NGO연구』, 10(1), pp.139-169.
- 이용식 (2011), 『인천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인천발전연구원.
- 이인원 (2013), “지방정부간 협력 네트워크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적 분석 : 네트워크 중심성과 지방정부의 숙성변수 간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7(2), pp. 117-139.
- 임승빈 (2009), 『정부와 NGO』, 대영문화사.
- 장수찬·박영선·김제선 (2015), 『지방정부의 공익활동 지원시스템에 대한 비교 연구 : 대전광역시를 중심으로』, 대전발전연구원.
- 조홍식·염태산·김희정·정의진·조상욱 (2011),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백서』, 유니세프한국위원회·한국NPO공동의회.
- 주성수·박영선·김이경 (2014), 『서울시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서울시NPO지원센터.
- Anheier, Helmut K. (2006). Nonprofit Organizations, New York : Routledge.
- Frumkin, Peter, (2002), 『On Being Nonprofit : A Conceptual and Policy Primer』, Harvard University Press.
- Kim, Jung Wook, and Kyujin Jung (2016). Does Voluntary Organizations' Preparedness Matter in Enhancing Emergency Management of County Government?, Lex Localis-Journal of Local Self-Government, 14(1), 1-17.

- Jang, Hee Soun, Jesus N. Valero, Jung Wook Kim, and Kristina Cramb (2015). Understanding Nonprofit Collaborations : A Case Study of Communities in Schools of North Texas and its Partner Organizations, *Journal of Nonprofit and Public Affairs*, 1(2), 100–117.
- Ott, J. Steven, and Lisa A. Dicke (2012). Social and Community Theories of the Nonprofit Sector. In J. S. Ott & L. A. Dicke. (Eds.), *The Nature of Nonprofit Sector* (pp.179–186). 2nd ed. Boulder, CO : Westview Press.
- Putnam, Robert (2000). Bowling Alone : Thinking About Social Change in America. In J. S. Ott & L. A. Dicke. (Eds.), *The Nature of Nonprofit Sector* (pp.237–246). 3rd ed. Boulder, CO : Westview Press.
- Salamon, Lester M. (1987). Of Market Failure, Voluntary Failure, and Third-Party Government, *Nonprofit and Voluntary Sector Quarterly*, 16, 29–49.
- Weber, Edward P., and Anne M. Khademian (2008). Wicked Problems, Knowledge Challenges, and Collaborative Capacity Builders in Network Setting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8(2), 334–349.
- Young, Dennis R. (1989a). Government Failure Theory. In J. S. Ott & L. A. Dicke. (Eds.), *The Nature of Nonprofit Sector* (pp. 151–153). 2nd ed. Boulder, CO : Westview Press.
- Young, Dennis R. (1989b). Third Party Government. In J. S. Ott & L. A. Dicke. (Eds.), *The Nature of Nonprofit Sector* (pp. 336–339). 2nd ed. Boulder, CO : Westview Press.

대전광역시 사회적자본센터, <https://socialcapital.kr>

부 록

인천광역시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기초조사

안녕하십니까?

인천연구원에서는 인천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대한 지원을 하고자 “인천시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기초조사”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비영리민간단체 활동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의 조사결과는 익명으로 통계 처리되며, 답변은 연구의 목적 이외에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인천시 공익활동 및 공익활동 지원의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2018년 4월

인천연구원 도시경영연구실
김정옥 부연구위원

본 조사에 관한 문의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책임 : 김정옥 부연구위원 (032-260-2696)

문 의 처 : 진성만 연구원 (032-260-2714)

I. 다음은 귀 단체의 일반사항 및 활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1. 다음은 단체에 관한 일반사항에 대한 항목입니다. 다음 항목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조직명		주소	구 동
활동분야	①	②	③
설립년도	년 월	회원의 수	()명
정관의 유무	① 있음 ② 없음	임원의 수	()명
인천시 등록일	년 월	상근직원의 수	()명
웹사이트 유무	① 있음 ② 없음	비상근직원의 수	()명
SNS 계정 유무	① 있음 ② 없음	자원봉사자의 수	()명
회원의 성별분포	남 ()% 여 ()%		
회원의 연령분포	20대 이하 ()%, 30대 ()%, 40대 ()%, 50대 ()%, 60대 이상 ()%		
조직형태	① 인천지역 독립조직 ② 전국단위 지부조직 ③ 전국단위 독립조직 ④ 전국단위 연대조직 ⑤ 기타()		

※ 회원의 수는 2017년 한 해 동안 회비를 낸 회원의 수를 의미합니다.

<참고 : 활동분야>

1) 교육	2) 권력감시	3) 노동·빈민
4) 노인	5) 모금·배분	6) 보건·복지
7) 보건의료	8) 여성	9) 아동·청소년·청년
10) 다문화국제인권	11) 자원봉사	12) 사회적경제
13) 지역공동체(풀뿌리·주민자치)	14) 지방자치·정치	15) 소비자권리
16) 문화·체육	17) 환경	18) 국제연대
19) 평화·통일	20) 종교	21) 도시·교통
22) 학술·연구조사	23) 기타()	

2. 귀 단체의 활동의 내용은 어떠하십니까?

- 1순위() , 2순위()
- ① 물품·서비스의 제공
 - ② 음악회·전시회·축제 등 개최
 - ③ 교육·강연회 등 제공
 - ④ 정보 제공 및 시민의견 수렴·전달
 - ⑤ 공청회·청문회 등 회의 참여
 - ⑥ 각종 토론회·캠페인 등 개최
 - ⑦ 공공기관과의 공식·비공식적 접촉
 - ⑧ 시위·집회·서명운동 등
 - ⑨ 모금·자원배분
 - ⑩ 자원봉사자 모집
 - ⑪ 사회혁신·공익활동을 위한 활동가 양성
 - ⑫ 사회혁신·공익활동을 위한 공간제공
 - ⑬ 기타 ()

3. 귀 단체는 지역주민들의 수요나 주요이슈 등을 알아보기 위해 시민간담회나 설문조사 등 의견수렴과정을 갖고 계십니까?

- ① 네(☞ 3-1로 이동)
- ② 아니오(☞ 4로 이동)

3-1. 의견수렴과정을 갖는다면, 얼마나 자주 갖습니까?

- ① 일주일에 1회 이상
- ② 2주일에 1회
- ③ 1달에 1회
- ④ 분기별 1회
- ⑤ 6개월에 1회 이하

4. 귀 단체가 공익활동 수행 시, 직면하는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공익활동 수행을 위한 상근 / 비상근 직원의 부족	①	②	③	④	⑤
2) 공익활동 수행하기 위한 자원봉사자의 부족	①	②	③	④	⑤
3) 공익활동 수행하기 위한 예산의 부족	①	②	③	④	⑤
4) 공익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공간 확보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5) 새로운 공익활동 사업 기획·전략에 한계	①	②	③	④	⑤
6) 공익활동을 위한 장기전망이나 지속가능성의 부재	①	②	③	④	⑤
7) 공익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홍보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8) 공익활동 수행을 위한 타 단체와 협력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9) 공익활동 수행을 위한 지원제도 및 지원기관이 부족	①	②	③	④	⑤
10) 정부지원사업 수행에 따른 단체 고유업무 수행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11) 회원들의 다양한 요구(needs)에 대응하기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12) 공익활동 수혜지역 및 대상 확대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13) 타 단체의 공익활동에 따른 중복수혜자의 발생	①	②	③	④	⑤
14) 기타 ()					

II. 다음은 귀 단체의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5. 귀 단체의 주요한 의사결정 단위는 다음 중 어느 형태입니까?

- ① 이사회(집행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 포함)
- ② 대표자
- ③ 실무자(사무국) 회의
- ④ 대표+실무자(사무국) 회의
- ⑤ 총회(임시총회 포함)
- ⑥ 기타 ()

6. 지난 한 해(2017년), 임원회의(이사회 또는 집행위 등)는 얼마나 자주 개최하셨습니다?

- ① 일주일에 1회 이상
- ② 2주일에 1회
- ③ 1달에 1회
- ④ 분기별 1회
- ⑤ 6개월에 1회 이하

7. 지난 한 해(2017년), 일반회원이 참여하는 총회는 얼마나 자주 개최하셨습니다?

- ① 1달에 1회 이상
- ② 분기별 1회
- ③ 6개월에 1회
- ④ 1년에 1회

8. 귀 단체는 활동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고 있습니까?

- ① 공개(☞ 8-1로 이동)
- ② 비공개(☞ 9로 이동)

8-1. 공개한다면, 공개하는 매체는 다음 중 어느 것입니까? (중복선택가능)

- ① 정기간행물
- ② 소식지(뉴스레터)
- ③ 총회(연차)보고서 발간
- ④ 홈페이지·카페·블로그 등 온라인 매체
- ⑤ 소셜미디어(SNS) 계정
- ⑥ 기타 ()

9. 귀 단체의 주된 수입원은 다음 중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회비
- ② 기부금
- ③ 정부사업 보조금
- ④ 기업후원금
- ⑤ 용역·서비스 제공수입
- ⑥ 자체수익사업
- ⑦ 기타 ()

10. 귀 단체의 지난해(2017) 예산과 항목별 지출 내역을 적어주십시오.

	총수입	()	만원
예 산	총	사업비	()만원
	지	운영비	()만원
	출	인건비	()만원

※ 예산은 회비, 보조금, 기부금, 사업수익 등 귀 단체의 총 수입을 말합니다.

2018년도 기획연구과제

인천시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을 위한 기초조사

발행인 이용식

발행일 2018년 7월 31일

발행처 인천연구원

인쇄처 032디자인(주)

ISBN 978-89-5678-739-8 93330

주 소 2271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심곡동 307)

© 인천연구원 2018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책임자의 견해로서 인천연구원의 공식적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